

북한인권백서 1999

인쇄/1999년 2월 19일

발행/1999년 2월 23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북한인권센터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8 팩시밀리 901-2546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60-5

7,000원

북한인권백서

1999



통일연구원

최 의 철(북한인권센터 소장)
서 재 진(북한인권센터 선임연구위원)
제 성 호(북한인권센터 선임연구위원)
이 금 순(북한인권센터 연구위원)
김 수 암(북한인권센터 책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서 문

인류의 역사는 인권신장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인 동시에 인간이 공유하여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는 '국제인권장전'으로 불리우는 「세계인권선언」(1945)과 「국제인권규약」(1966년 채택, 1976년 발효)을 마련하여 인권 존중의 국제화 시대를 열어 놓았고, 비정부단체들도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왔던 북한의 인권문제에 국제적 관심이 모이게 된 것은 경제난·식량난으로 인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면서부터이다. 유엔은 인권소위에서 97년에 이어 98년에도 대북 인권결의문을 채택하였고, 북한의 개선조치가 없을 때는 99년에도 북한인권문제를 자동 토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국제적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에 걸쳐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식량난은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파괴와 주민들의 인성파괴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문제도 또 하나의 심각한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당원의 「북한인권센터」는 1996년 이래 북한 인권현황을 정리하여 연례보고서인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99 북한인권백서」는 국제인권규약의 인권보호 기준에 따라 북한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인권사안을 정리·분석하였다.

본 백서는 많은 귀순자 인터뷰와 기타 인권자료들을 토대로 작성

되었다. 물론 본 백서의 내용이 자료의 객관성과 검증문제등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본 백서가 북한인권예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와 국제여론 환기를 위한 매개체가 되고, 남북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통일정책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정책연구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9. 2.

통일 연구원

원장 梁榮植

목 차

I. 1998년 북한인권상황 개요	1
1. 북한의 인권상황 주요이슈	1
2.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개요	7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개요	12
II.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과 인권개념	15
1.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	15
2.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20
3. 북한 인권개념의 특징	22
I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27
1. 생명권	27
2. 신체의 자유	34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0
4. 평등권	45
5. 자유권	56
6. 참정권	79
7. 여성의 지위	82
IV.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89
1. 생존권	89
2. 사회보장권	97
3. 근로권	102
4. 직업선택의 자유	104
5. 교육을 받을 권리	106

V.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11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상황	111
2. 남북억류자 실태	127
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실태	129
<부록 I> 남북억류자 명단	145
<부록 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67
<부록 III> 북한인권상황 관련 제50차 유엔인권소위 결의안	194

도 표 목 차

<표 3-1> 북한의 구금형태	37
<표 3-2> 주민성분 조사사업	47
<표 3-3> 3계층 51개부류 분류표	50
<표 3-4> 성분 분류표	51
<표 3-5> 복잡군중 분류표	52
<표 5-1> 해산된 수용소	119
<그림 5-1> 특별독재대상구역 관리현황	118

I. 1998년 북한인권상황 개요

북한은 경제난과 식량난에 따른 주민들의 이동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을 고려하여 사회주의헌법을 개정(1998.9.5)하면서 인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등 제도상으로는 다소나마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1998년도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경제난과 식량난의 지속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과 공개처형이 지속되고 있어 시민적·정치적 인권상황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1. 북한의 인권상황 주요이슈

식량난 지속에 따른 생존권 위협

북한에서는 인권보장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면서 국가에 의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북한주민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 당하고 있다.

현재 공식배급체계는 특수공급지역인 평양, 그리고 당료, 고급공무원, 군인 등 특수계층의 생계보장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배급체계가 와해되면서 일반도시 가정의 경우 전체 식량소비량의 약 70%정도 혹은 그 이상을 농민시장이나 암시장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불법적인 상행위에 몰두하고 있다. 식량난은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나 도시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곡물이 부족하고 교통수단이 열악한 산간지대인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지역의 식량난이 심각하다.

1998년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럽연합(EU)의 연구원들이 7세미만의 어린이 1,800명을 무작위로 추출, 영양상태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7세미만의 어린이 중 62%가 장기적인 영양부족으로 인한 발육부진 상태에 있으며, 16%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식량난에 따라 엄청난 숫자의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3년동안 영양실조에 의한 사망자수가 매년 50만~80만명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장엽은 96년 11월 중순 식량상태와 아사자 통계를 정기적으로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중앙당 조직부 책임자를 통해 95년 당원 5만명을 포함해 약 50만명이 굶어 죽었으며, 96년 11월 아사자 수가 1백만명에 이른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97~98년 식량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매년 1백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하 귀순자) 김동수(1998.2 입국, 전 유엔식량농업기구 북한대표부 서기관)는 평양에 다녀온 김홍림 대사로부터 북한내 아사자가 2백~3백만명에 이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94년 이후 아사자 350만명), 국군포로였던 장무환(1998.9. 입국, 97년 아사자 100만), 뉴욕에 본부를 둔 대외관계위원회의 35인 특별조사반(96~97년 아사자 100만) 등도 북한에서 엄청난 수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아사태를 몰고온 식량난의 일차적인 원인은 북한당국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기인하고 있다. 북한의 폐쇄적인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로 식량난이 악화되어 왔다. 폐쇄주의체제에 의한 기술낙후, 집단적 생산방식에 의한 물질적 인센티브 결여와 중공업 우선정책의 추진 등의 정책은 만성적인 경제침체를 가져왔다. 더욱이 에너지 자원의 부족과 그에 따른 비료·농약·장비 등의 공급 부

죽은 영농기반을 약화시켜 식량증산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외국에서 지원되는 원조식량을 포함한 식량이 군과 당정간부들에게만 배급되고 일반 서민들에게 제대로 배급되지 않는 왜곡된 배급체계가 일반백성들의 생존권을 '아사'라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가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식량을 구하러 집을 떠나면 병들어 죽거나 행방불명되기 일췌이다. 부모를 잃고 집없이 떠돌아 다니는 아이들을 북한에서는 꽃제비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식량난으로 여성들이 중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혼자라도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이혼률이 증가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내에서의 인권유린

북한의 인권실태 가운데 가장 신랄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치범수용소내에서의 인권유린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탄광·산간오지에 '00호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설치된 정치범수용소는 반국가사범 또는 민족반역자로 분류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북한이 이러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은 파악할 수 없지만 1988년에도 정치범수용소에서 탄압과 인권유린은 지속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남도, 평안남도 등 외딴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10개의 수용소에 20만 7천여명을 집단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귀순자 강철환(1992. 8 입국)과 이순옥(1995. 12 입국)도 98년 2월 2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에서 현재 약 20

만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미국무부는 1998년 1월 30일 발표한 『'97 각국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정치범수용소에 15만~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이하 AI)는 수용소 규칙을 어긴 죄수들을 가두기 위한 ‘형벌실’이 설치되었다고 밝혔는데, 이곳은 눕거나 서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곳으로 죄수들은 몇주 동안 이곳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행위는 제50차 유엔인권소위가 채택한 대북인권결의문에서 북한내에서의 불법처형 및 실종에 관한 빈번한 보고와 수천명의 정치범이 억류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심각한 학대에 따라 질병, 기아 및 유기로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절대복종과 “소수의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의 인권이다”라는 북한의 인권개념에서의 계급적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인권유린 실태

식량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불안정한 신분상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규모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2,000~3,000명 수준으로 추정되나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탈북자들이 10만~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북한주민들의 탈북현상은 1990년대 이후 계속된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1995~97년 수해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의 가중, 생필품 배급과 의료혜택 중단,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 북한내 사회기강 해이와 사회일탈현상의 증가, 해외체류자 및 근로자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송환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송환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이다.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발각될 경우 강제송환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98년 12월 16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중국 吉林省 通化市 공안당국이 탈북자 150명을 검거해 북한으로 압송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吉林省 공안당국은 12월 16일 당일 인계한 20명의 탈북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1백여명을 적발해 돌려보냈으나, “그들은 배가 고파서 왔으며 정치적인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1998년 6월 안도현지역에서 부녀회장이 중국주민과 결혼한 탈북여성들에게 호구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강제로 송환하기도 하였으며, 두만강유역에서 여성도강자가 인신매매와 관련된다하여 현장총살된 경우도 발생하였다. 1998년 10월 28일 중국신문(服務導報와 延邊日報)이 최초로 山東省 원청현에서 발생한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3,900~4,700위안, 한화 약60만~80만원에 거래) 및 강제송환 사건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송환된 북한이탈주민들을 초기에는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수용소에 특별관리하고, 가족들을 통제구역으로 강제이주 조치하였다. 그러나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자 탈북후 체류기간과 탈북동기에 따라 처벌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1997년 9월 27일 이후 특정경우

(보위부 및 사회안전원 집결소에서 관리)를 제외하고는 '9.27구호소'(꽃재비수용소)에서 일정기간 수용후 석방하는 등 처벌을 완화하였다. 1998년 2.13 조치이후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이탈한 주민들을 출신지역별로 분류하여 국경지역 주민들은 가볍게 처벌하고, 황해도 등 내륙지방주민들은 조국을 배신한 자로 규정, 정치범으로 처벌하나 가족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은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최근 북한이 헌법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배반죄(구헌법 제86조)를 삭제하는 등 급증하는 탈북사태에 대응하여 처벌을 완화함에 따라 제3국내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난민지위 획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은 귀환시 정치적 처벌이 명백한 경우와 정치적 처벌보다는 단순처벌후 석방될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개인적인 처벌의 위험을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즉 개인의 출신지역, 출신성분, 연령, 탈북의 기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귀환의사를 무시한 강제송환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이 강제송환이후 정치적 처벌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개별적인 정치적 박해의 위험은 줄었으나 북한내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밀입국자 송환의 경우로 처리하여서는 곤란하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내 극도의 식량난을 피해 탈출한 경우로 정치적 난민(mandate refugee)의 지위를 부여받기는 어려우나, 국제사회의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향유민(displaced persons)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은 금지되어야 한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IOM)에 따르면, 불법이주자(undocumented migrant)라 할지라도 생명권, 노예 및 강제노동금지, 고문 및 비인도

적인 처우금지, 사생활 보호권, 이동의 자유, 사상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송환에 따른 인권유린문제 뿐만 아니라 제3국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유린 또한 심각하다. 중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은 신분상 불안정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중국내 합법적 거주를 위한 호구(공민증) 및 체류증을 구입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등의 대상으로 전락 하기도 한다.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가 초기에는 농촌 총각들과의 결혼을 주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갈수록 유흥업소(매춘), 조직폭력배 연루 등 강제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탈북도 급증하고 있는데, 일본 오사카에 본부를 둔 북한민주화단체인 「구원하라! 북조선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는 탈북어린이들이 2만명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내 북한어린이들은 가족해체로 인해 단신 탈북하거나, 부모동반 탈북후 부모가 병사 혹은 강제송환되어 홀로 남게 된 경우로 구결과 절도로 연명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강제송환시 '9.27구호소'에 7~15일정도 수감후 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정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발목절단등 가혹한 처벌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개요

경제난·식량난이 지속되어 사회일탈행위가 증가하자 북한에서는 정치범 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사범에게도 가혹한 형벌인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생명권을 유린하는 형벌인 공개처형은 1998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식량난에 따라 시설물을

절취(기업소의 부속품 특히 동)하여 식량으로 교환하는 등 경제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육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일탈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방으로 공개처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귀순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최근 공개처형이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순 모방범죄가 증가하고 오히려 체제 저항의식 조장한다는 인식에 따라 공개처형이 다소 주춤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공개처형이 감소하는 대신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고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편으로 비밀처형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생명권의 유린에는 근본적인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재판기관은 다른 국가기관의 사업지도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북한은 1992년 1월 15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사소송절차상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진일보한 면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에서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을 자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처우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통하여 성분차별의 완화를 통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계급에 따른 성분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난과 식량난이 지속되면서 성분차별은 새로운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아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하에서도 고급간부 등 김정일체제를 지탱해주는 특수계층에 대해서는 배급을 실시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계급에 따른 성분차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제난과 식량난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평양에 거주하지 못하게 강제 이주시켜 이들을 집단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차

별과 박해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귀순자 강철환과 이순옥은 98년 2월 2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에서 난쟁이나 장애인들에게 불임수술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1998년도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점은 거주 여행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북한은 주거와 여행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로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사회적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고 북한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묵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자유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도 계속되었다.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997년(제49차 회기)에 이어 1998년(제50차 회기)에도 북한당국에 대해 자국민의 출입국 등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지역간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UN 인권 소위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75조)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였는 바(구헌법 제86조), 이것은 식량난에 따른 주민들의 월경사태가 빈발하는 것을 모두 민족반역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통제의 목적상 자유로운 주거이전 및 여행은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다.

북한이 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유엔인권소위는 대북인권결의문에서 독립적인 국내 및 국제인권감시기구에 대해 북한의 인권상황 조사를 허용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과 동 기구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북한내에서 간행·배포하는 것을 허용해 주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1992년의 구헌법에서는 이미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삭제함으로써 형식적이거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바 있는데,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던 조항에서 ‘누구든지’를 삭제하였다(헌법 제68조). 이러한 제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에 위배되는 어떠한 사상도 용납하지 않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근거하여 수령(김일성·김정일)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북한의 체제상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숭배행위는 ‘10대 원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추모의 일환으로 그동안 최고인민회의나 당 대회 및 각종 선거 등 일체의 참정권 행사가 중단되었다. 금년도에 김정일이 당 총비서로 취임하였지만 선거가 아닌 추대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참정권은 여전히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4년만에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선거에서도 기존의 선거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92년 10월 「각급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법」을 채택, 찬성 또는 반대투표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제 5조)을 신설하였으나 사실상 기표행위에 있어서 반대투표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도 반대할 경우 횡선을 그어 삭제하게 되어 있어 반대투표를 하려면 기재 행위를 해야 하므로 반대사실이 노출되어 반대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적 남녀평등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여성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여성들이 살아 온 삶은 가부장적 의식과 여성억압적인 제반 구조의 병존

으로 인해 사회참여에서나 가정생활에서 여성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식량난으로 배급체계가 와해되면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가부장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음식물은 우선적으로 아버지, 아들, 딸의 순서로 주어지게 되며, 어머니인 여성은 항상 마지막 순서가 되게 된다. 최근 식구들의 식량을 구하는 것이 여성의 주요 책임으로 부각되면서 여성은 이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며, 가정폭력의 피해대상이 되는 경우도 증가하게 되었다. 귀순자의 증언에 따르면 가정내 폭력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나 부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가정 폭력이 전혀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은 식량뿐만 아니라 생필품,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각 지역을 떠돌아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국경을 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폭력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직장 등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이 일상적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성희롱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하대하고, 정당한 항의도 '버릇 없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외래문화의 유입에 따라 남녀 간의 이성교제가 확대되면서 혼전·혼외 성행위도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당국이 결혼적령기 전까지의 금욕을 강조하여 혼전·혼외 성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미혼임신부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낙태수술 및 자살을 시도하거나, 간혹 상대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개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식량난에 따른 북한에서의 생존권 위협은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이러한 생존권의 위협과 더불어 경제난은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무상치료제’를 가장 자랑하여 왔는데, 이것도 역시 경제난에 기인한 자원부족으로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 무상치료제를 기초로 질병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의사담당구역제는 담당의사들의 진료수준 및 자질 미달과 4~5개 인민반을 책임지는 호담당의사에게 최고 4,000명까지 진료케 하는 과다 할당으로 체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분에 따라 의료체계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병원들의 치료시설과 의약품 수준은 극히 열악하다. 북한에서 소아과 의사를 지낸 귀순자 이영실의 증언에 의하면 의료기구가 없어 병원이 기능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주사기 등의 초보적인 의료기구마저 없기 때문에 의사는 진단만 내려주며 처방은 환자에게 맡기는데 환자가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오면 의사는 투약방법을 지시해주는 정도이다.

의료체계의 마비로 질병에 의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경제난과 에너지난에 기인하여 깨끗한 수도물 공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북한주민들이 수인성 전염병에 희생 당하고 있다. 파라티푸스, 콜레라 등의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으며 75년까지 완전 퇴치되었다고 선전되었던 결핵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북한의 결핵환자는 300만~400만 정도이며 감염자는 700만~800만에 이른다.

그리고 의료상태가 극도로 열악해짐에 따라 출산여성에 대한 의료 사업조차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5세까지 생존율도 50%에 불과할 정도로 유아사망율이 심각한 실정이다.

북한은 1998년 서방세계로부터 수백톤의 의약품을 지원받았다. 북한은 이같은 막대한 양의 의약품을 특권층용으로 전용한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의약품 사용에 대한 내역과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의약품이 국제지원단체를 통해 시급 병원에도 일부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역 및 병원의 간부들이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프다는 핑계로 무더기로 빼내어가서 장마당에 비싼값으로 판다고 한다. 1998년 9월 30일 북한에서 무상 의료지원활동을 벌여온 「국경없는 의사회」(MSF)는 북한당국이 의료인들의 북한 주민 접근을 차단하고 지원된 의약품의 배급감시를 거부하는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지원을 하려는 국경없는 의사회의 활동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에서도 공민은 근로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제규정들에 규정된 노동에 관한 권리는 사실상 권리보다는 의무에 가깝다. 북한에서의 노동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전 주민의 의무로 되어 있다. 북한에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자유노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노동조합 형태인 「조선직업총동맹」은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갖지 못하며 노동당만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업동맹은 단지 노동동원을 위한 통치조직일 뿐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 직장 정치조직의 선전선동과 압력에 의해 휴가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개인들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관의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장배치는 중앙경제

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소질·능력은 부차적이며,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유린되는 대표적인 예는 ‘무리배치’인데, ‘무리배치’란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탄광 및 각종 건설공사장 등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에 인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북한사회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자 북한당국은 제대군인들과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을 탄광, 건설현장 등에 집단배치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김정일의 ‘친필서한’을 보내고 ‘충성의 결의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여 퇴직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식료·유통 부문으로 직장을 이동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직장이동을 위해 해당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고 간염 및 결핵 요양소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북한 교육의 질은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종이 부족 때문에 교과서와 공책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평양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학교에서는 인민학교(초등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경우 90년대 들어서 새교과서가 전혀 보급되지 않아 상급학생들로부터 낡은 교과서를 회수, 학급당 각 과목별로 6~7권을 교실에 비치하고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경제난에 기인하여 학생들의 학교출석률이 매우 낮다. 대학생의 결석의 원인은 식량구입을 위해 장사에 나서고 있는데 기인하며 자퇴율이 30%에 이르는 학교도 많다고 한다. 유치원 원아들의 출석률은 60% 이하이며,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들의 출석률은 40%선에 머물고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의 출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부모들이 식량구입을 위해 집을 장기간 비움에 따라 집을 지키거나 부모와 함께 식량구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II.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과 인권개념

1.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

최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1998.9.5)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 지도체제를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수정·보완하였는 바, 그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체제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특이한 사회주의체제이다.

북한은 유교적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은 전체주의국가이며 1당지배의 전제주의국가이다.

북한의 체제는 통치행위와 권위의 근거에 있어서 전통적인 유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기존헌법에 없었던 「헌법서문」을 신설하고 김일성을 ‘공화국의 창건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칭송하고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여 주석직을 폐지하였다. 또한 개정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김일성 공화국’, 즉 북한이 ‘김씨 왕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이 주창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김일성의 절대적 권위를 정당화하고 있다(헌법 제3조). 주체사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력사 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 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로동계층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이니

다...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정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그를 옹계 운영하여 나갈수 있습니다.1)

위 논문에서 주체사상은 수령론으로 귀착되고 있다. 곧 북한정치체제의 핵심은 수령의 독재에 있다. 수령의 영도와 당의 조직적 기반 없이는 인민대중은 무력하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더 확대하여 공산화혁명과정을 수령의 지도와 완전 일치시키는 데까지 논리를 비약시키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는 곧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수령의 요구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교양 개조하여 수령에게 충실한 공산주의자로 만들며...수령의 교시 가르침을 충직하게 실현하는 당에 의해 지도될 때만 노동계급은 자주적 혁명계급이 된다.2)

결국 개인을 개조하여 수령의 뜻에 맞추는 것이 곧 혁명이라는 것이다. 이정식 교수는 “만약 김일성 주석의 말이 조선노동당의 정신(soul)이라면 당조직은 그의 몸이요, 이 몸은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중앙의 모든 변덕과 지시에 복종할 것이 강요되고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3)

김일성의 권위는 과거 유교사회에서와 같이 우월한 도덕성에 기초

1)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3』, 1982. 3. 31, p. 131.

2) 『철학사전』, “김일성 혁명사상,” p. 115.

3) Chong Sik Lee,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Stanford Calif: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p. 133.

하고 있다. 김일성은 맑스-레닌주의의 옷을 입힌 주체사상으로 새로운 도덕적 체계를 확립하고 지도자들의 도덕적 우월성과 불패성을 강조하며 재충전하고 있다.⁴⁾

북한은 과거 유교주의 전통을 충분히 활용하여 김일성·김정일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고, 권위에 대한 공경을 위해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개인이익을 배제해 왔다.⁵⁾ 또한 유교적 전통인 ‘충효’를 상하관계의 근본으로 강조하고 활용하여 왔다. 이와 같이 김일성의 북한지배는 전통적 집단가치와 태도가 심분 활용되고 있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가 강조되고 있다.

황장엽 전 노동당비서(이하 황장엽)는 김일성은 과거 봉건시대의 왕의 지위를 누렸고, 김일성 일가의 신분적 특권면에서 보아도 유교적 봉건사회와 유사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황장엽은 북한에서의 사람평가는 첫째는 김일성·김정일에 절대적으로 충실한가, 둘째는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1970년대부터 추진해 왔던 김일성 우상화 작업은 김정일을 포함한 그의 ‘혁명적 가계’를 절대 숭배하는 신격화작업으로 발전되었다. 이와 같은 우상화 과정에서 1974년 ‘10계명’으로 불리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하 10대원칙)⁶⁾이 마련되었고, 이후 ‘10대원칙’은 김일성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사회규범이 되었다.

4) Lucian W. Pye는 毛澤東 치하의 중국을 유교적 레니니즘으로 평가하고 있다. Lucian W. Pye, *The Spirit of Chinese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참조. 그러나 김일성·김정일 지배의 북한은 사상교육의 강도나 통치스타일에서 Pye가 정의한 중국모델을 능가하고 있다.

5) Richard H. Solomon은 毛澤東 치하의 중국을 전통적 유교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Richard H. Solomon, *Mao's Revolution and the Chinese Politics*(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71) 참조. 유교전통은 북한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6) ‘10대원칙’의 내용은 본문 p. 72 참조.

김일성은 ‘인민의 태양’, ‘경애하는 수령’, ‘인류가 낳은 위대한 지도자’ 등 미사려구로 찬양·숭배되었고, 김일성 사후 북한인민을 ‘김일성 민족’으로 칭하고 1997년부터 김일성 출생년도인 1912년을 ‘주체원년’으로 삼아 ‘주체’연호를 사용키로 하고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 칭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있다.

김정일은 98년 개정된 수정헌법에서 국방위원장직에 취임하였다. 북한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여 국방산업 전반을 지도”하고 있다(헌법 제102조). 즉 국방위원장은 국가최고 직책으로 그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었는 바,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정일에 대한 추대사를 통해서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최고의 직책”이라고 천명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이 부자세습체제를 완성한 역사상 최초의 공산주의 왕국으로 변질되었다. 김정일의 세습준비는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김정일은 1982년 3월 앞에서 인용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고 주체사상과 수령 김일성에 대한 충성에서 실질적인 후계자로 부상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북한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헌법 제1조). 경제원칙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를 토대(헌법 제19조)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고(헌법 제20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헌법 제21조)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경제는 계획경제(헌법 제34조)라고 규정하여 사회주의 경제운영의 중앙집권적 성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계급국가이다. 북한은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완성을 주

창하고 사회주의 혁명에 동조하지 않는 계급은 독재의 대상이 되고, 인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주권은 인민만이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헌법 제4조). 이에 따라 북한은 58년부터 8차례에 걸친 주민성분조사를 실시하여 3계층 51개 부류로 분류하여 차별하고 있다.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다.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김정일이 지배하는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완전한 권력집중과 사회의 완전한 복종 및 주체사상에 규정된 완전한 사회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계속적인 선전과 교육을 통한 대중동원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개인보다 국가집단을 앞세우고 전체인민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은 사회를 동지적으로 단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라고 선언하고(헌법 제10조),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헌법 제81조). 구헌법의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생활의 기초이다”라는 규정은 삭제하였으나 집단주의 원칙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헌법 제63조). 이와 같이 북한은 집단주의 원칙에 강력한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적 영도체제가 첨가된 현대화된 전체주의 국가이다.

북한은 노동당 1당지배의 전체주의 국가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조). 북한의 조선로동당은 국가위에 군림하고 있는 1당 지배체제이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였고, 근로대중의 이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 구성하여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과 유일적 영도 아래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 조직(조선로동당규약, 1980.10.13)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은 김일성의 유일사상에 의해서 지도되고 당이 1인 독재체제 확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노동당은 일종의 유사종교단체가 되어 당원과 인민들에게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이고 확고한 신앙(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2.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

금년에 개정된 수정헌법에서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지도체제, 경제정책 및 인권문제 등의 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옹립하고 김정일을 실질적인 최고통치자인 국방위원장에 추대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사망후에도 주석승계를 하지 않고 김일성의 권위를 빌려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유훈정치로서 북한은 죽은 김일성의 권위로 다스려지는 특이한 '신정체제'라 할 수 있다.⁷⁾ 김정일은 국제적 고립 및 경제난 악화 등으로 김일성의 이름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경제난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독자적인 김정일 지도체제를 구축하는 데 심각한 도전이 예상된다.

북한은 공산주의에 가장 가까운 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수정헌법은 북한의 사회주의를 상당히 후퇴시켰다. 수정헌법에서는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제한적이거나 '자유'의 폭을 넓혀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난·식량난 악화로 사회주의의 요체

7) 이상우, 「북한정치입문」, 나남출판, 1997, p. 57.

인 중앙배급체제가 기능을 상실한 것은 90년대초부터이다. 장마당이 배급체제를 대신하고 시장기능을 수행하며 공민이나 일반단체들의 무역행위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 경제난을 완화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수단의 소유주체 및 개인소유 확대(헌법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경제관리에서의 독립채산제 명문화 및 수익성 적용(헌법 제26조, 제28조 및 제33조), 대외무역의 국가감독권 폐지 및 특수경제지대 장려와 특수경제지대내에서의 다양한 기업의 창설·운영을 장려(헌법 제36조, 제37조)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경제의 최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현대와의 금강산관광 계약 실현 등 대남관계 및 대외개방에 조심스러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변화는 앞으로 강성대국론에 입각한 김정일 지도체제를 확고히 하는 포석의 일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인권문제와 관련,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헌법 제75조)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주민들의 거주 여행의 자유는 UN 인권소위⁸⁾ 등 국제사회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이 명목상으로는 신장되었다. 물론 이것이 사적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때는 인권신장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극심한 식량난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지역간 이동을 묵인하는 정도에 그칠 경우에는 인권신장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구헌법 제86조의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였는 바, 이것은 식량난에 따른

8)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소수민족의 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는 제49차 회의('97.8.21)와 제50차 회의('98.8.19)에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는 바, 동 결의안에서 자국민의 출입국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였다. 「결의안」 전문은 부록 참조.

주민들의 월경사태가 빈발하게 빚어지고 있는 것을 눈감아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 구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수정헌법에서는 ‘누구든지’를 삭제하였다(헌법 제68조). 이는 종교인 협회를 비롯한 각급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북한의 변화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보다 김일성·김정일의 ‘교시’가 우위에 있는 체제의 성격상 북한에서 인권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란 당분간 어렵다.

3. 북한 인권개념의 특징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북한의 인권의 개념 및 정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 철저히 의존한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 따르게 하기 위하여 ‘10대원칙’을 만들었다. ‘10대원칙’은 주민의 사상은 물론 주민의 생활까지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인권보장의 선행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인권개념에서는 주민의 인권보장을 수령의 시혜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국가의 인권문제를 인덕정치와 광폭정치의 부재로 설명하고 있다.

『로동신문』(1994.11.1)에 발표된 김정일 명의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문건에서부터 인덕정치가 본격적으로 선전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들어서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연일 인덕정치의 개념을 해설하고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평양방송』의 “김정일혁명력사강좌 163회”(1995.1.16)에서 인덕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덕이라는 것은 인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은혜로운 사랑과 보살핌, 혜택을 베푸는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품성을 말합니다. 옛날부터 정치가는 인덕이 높아야 하며, 나라는 인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당의 인덕정치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모든 혜택을 베푸는 정치이고 모든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며 각계각층의 인민들에게 차별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는 광폭정치입니다.

또한 북한은 『로동신문』(1995.6.24)에서 인덕정치와 인권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인권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 주는 정치는 인덕정치이다. 인덕정치는 사랑으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고 믿음의 힘으로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워 참된 삶을 누리게 하는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정치이다.

북한의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란 과거 군주들이 국민에게 베푸는 시

해적인 조치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인덕 정치와 광폭정치를 강조하여 성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민들을 끌어안아 일종의 국민통합을 이루어 정권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권이 지도자의 시혜로 간주되고 있고 성분분류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헌법 제1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독재 강화’라는 규정은 사회주의 혁명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계급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계급들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행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인권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의식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1995.6.24)은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라는 글에서 인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였다.

우리는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은 것처럼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인 인권이 아니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주고 인민대중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수의 계급적 원썬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의 인권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을 ‘계급적 원썬’ 또는

‘적대분자’로 규정하여 철저히 제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이들의 자유와 권리는 원칙적으로 박탈되고 인권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넷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개인의 천부적이며 절대적인 권리보다는 집단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헌법 제63조),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북한헌법에서 이를 알 수 있다(헌법 제81조).

1996년 11월 유엔총회에서 북한대표는 “사회와 집단을 떠난 개인이 있을 수 없듯이 집단의 인권을 떠난 개인의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내세워 개인이 집단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하며, 개인이 ‘계급적’ 집단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개인의 이해관계와 사회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이해관계는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대한 침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생활원칙은 반드시 사람들간의 반목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그 어느 사회보다 첨예화시킨다는 것이다.⁹⁾

다섯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인권을 정치적 개념으로서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의무를 다하는 인민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라고 강조한다. 바꾸어 말해서 집단의 구성원은 소속집단 또는 그 집단의 대표인 수령(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한 경우에 한해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

9)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 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 본질,” 「근로자」 제2호, 1990, p. 93.

및 정권기관의 통제와 사적 생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모든 법의 기본권도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시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섯째, 북한의 인권개념은 인권보호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권 일반이 보편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권의 보장을 강조한다. 따라서 북한은 개인의 신체적 보호나 자유로운 활동과 관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는 ‘권리와 자유의 실질적 보장’, ‘물질적 행복추구’ 등과 관련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제3세계가 주장하는 ‘개발권’(the right to development)과 인권의 상대주의(relativism)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의식주를 국가가 해결해 인간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지 못하면 인권보장이 어렵다는 개발권 논리에 편승하고 있으며, 인권문제는 국가주권사항으로서 “매개 나라와 인민이 선택한 정치·경제 제도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나라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치문화의 상대주의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의한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을 자본주의식 인권보다 우월하고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곱째,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서 볼수 있듯이 북한의 사법제도는 통치권에 예속되어 있어 법적·제도적으로 인권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정치사전』은 사법기관의 기능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유일적인 정확한 실현을 담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법기관에 의한 공정한 인권보호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조문들로 구성된 북한형법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죄형법정주의원칙을 기대하기 어렵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부인되고 있다.

Ⅲ.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1. 생명권

생명권의 고유성과 북한의 사형규정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간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모든 사람은 마땅히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또한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형은 당시의 현행법과 여러 국제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어야 하고,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7년 북한이 제정한 형법에서는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고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침해하는 반국가범죄자들과 일반범죄자들에게 사회주의국가의 폭력적인 진압 및 제재수단으로서 형벌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에는 사형, 노동교화형, 재산몰수형, 선거권박탈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1987년 이전에는 구 형법에 근거하여 50여 종류에 달하는



광범위한 범죄행위에 사형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사상범으로 숙청되고 처형되었다. 특히 정치적 억압이 심했던 1956년 소위 「8월 종파사건」 이후와 1967~72년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당분자 또는 반혁명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다. 이와 관련, 뵘에르 리굴로(Pierre Rigoulot)는 『공산주의 흑막』(1997.11 출간)에서 북한정권 수립 이후 노동당의 숙청으로 숨진 사람은 10만 명이고, 강제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은 모두 150만 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형법은 최소한 세 종류 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사형에 해당되는 반국가범죄로는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등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화국 전복 음모 및 폭동을 부추긴 자, 주모자, 주동분자: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제44조)
2.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해 테러행위를 감행한 자: 사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제45조)
3.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자: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사형(제47조)
4. 민족해방운동과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하거나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 사형 또는 정상이 가벼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제52조)

그러나 이 조항들은 애매모호한 용어의 사용과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으로 인해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강제함으로써 정치범과 양심수들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생명권을 널리 위협하고 있다. 북한관리들은 국제인권단체들에 대해 특별한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한다고 사실을 호도하면서 사형판결과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은 탈북자 처벌과 관련이 있는 형법 제47조가 1995년 개정되었다고 AI에 통보한 후에도 개정된 조항의 정확한 내용에 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공개처형

북한에서 사형은 “계급적 원수들의 더러운 운명에 최후의 종지부를 찍는 무자비한 혁명의 철추이며 계급투쟁의 확고한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위력적인 법적 수단”으로 간주된다. 사형의 대표적인 실시 방법으로는 공개처형이 채택되고 있다. 공개처형은 시기에 따라 빈번하게 행해지며, 그 대상에는 정치범·흉악범 뿐만 아니라 경제사범 등도 포함된다.

1993년 10월 AI는 북한관련 특별보고서에서 북한당국에 의한 공개처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사형은 북한에서 정치범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개적인 사형선고를 목격했던 사람들과 전에 수감되었던 사람들, 방북자들은 사형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범에 대한 사형이 증가하고 있고, 처형자도 매년 수십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형집행은 총살이나 교수형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사형판결을 받은 죄수는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노동자·학생들이 집결한 대중모임 앞에 끌려나와……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997년 1월 AI는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1970년 이후 1992년까지 최소한 23명을 공개처형하였다. 보고서가 인용한 증언자 대부분이 원산·청진·함흥·신의주·평산·평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최소한 1건 이상의 공개처형을 목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외부에 알려진 공개처형은 일부에 불과하다.

처형은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참혹하게 실시된다. 처형방법으로는 보통 총살형이나 교수형, 화형이 선택되며,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시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또는 대상자가 복잡군중(적대계층)에 속해 있다고 해서, 또는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다고 해서 임의로 공개처형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김일성 사망 이후 일시 중단되었다가 1995년 말부터 재개되었다. 귀순자 정갑열·장해성(1996.5 입국)과 홍경화(1997.5 입국)는 1995년 하반기에 김정일의 ‘친필방침’에 따라 시도별로 공개처형이 재개됨으로써 김일성 사망 이후 철폐된 범죄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경제난·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일탈현상의 증가로 공개처형의 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귀순자 주영희(1997.5 입국)에 의하면, 1995년 11월 함흥 회상구역에서는 당시 17세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가

320원(북한돈)을 훔친 죄로 처형당했다.¹⁰⁾ 귀순자 김원형(1997.5 입국)은 1996년 10월 남신의주에서 절도죄로 ‘김광철’ 형제가, 1997년 초에는 신의주에서 구리선을 절취하여 밀매한 사람이 공개처형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¹⁾ 또 자매 귀순자인 장성숙과 장선영(1998.2 입국)은 1995년 후반기부터 북한이 구역별로 공개처형을 자주 실시하고 있는데, 1995년 12월 평양 만경대구역에서 인육판매사건으로 일가족 5명이 공개처형 당했다고 말하였다.¹²⁾ 귀순자 김경일(1998.6 입국)은 “사회안전성에서 범죄자를 색출하여 군마다 30명 이상씩 처형하라는 공식적인 지시가 내려왔는데, 은덕군에서는 주로 동경다리에서 많을 때는 4~5명씩 처형하고 있다. 선봉에서도 96년 겨울에 한명 처형되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감자를 훔친 것이 죄목이었으나 실제로는 당비서와의 싸움때문이었다. 공개처형 과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경력과 죄명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인민재판소에서 파견된 판사의 처형 판결에 따라 즉각 시행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¹³⁾ 또 귀순자 손철남(1998.5 입국)은 “97년초부터 평안남도 철산읍 장마당에서 1달에 한번 정도 공개처형이 실시되어 왔는데, 학교와 기업소, 농장 등에 공개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미리 통보되곤 하였다. 황용수라는 사람이 소를 잡아먹었다고 공개처형된 것을 비롯해 3명의 공개처형이 있었다. 눈을 가리지 않고 처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부장이 죄명을 밝히고 공개처형을 지시하면 9발을 발사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⁴⁾

북한당국은 심각한 체제위기를 단속하기 위하여 간부들조차 처형

10)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7.8.22.

11)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7.8.21.

12)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8.5.14.

13)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8.9.8.

14)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8.9.9.

하고 있다. 황장엽은 1995년 평양 형제산구역에서 영화부문 간부와 배우 등 7명을 외화벌이 명목의 음란영화를 제작한 죄로 공개총살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일본 『교토통신』(1997.11.6) 등은 방북 소식통에 의거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위원 이봉원 대장, 북한노동당 농업담당비서 서관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서기 최현덕 등 다수의 간부가 1997년 9월 평양과 평남 평송 등에서 반역과 간첩사건, 부패혐의로 공개 또는 비밀처형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체제에 대한 항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권위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공개처형이 자주 실시되고 있다. 특히 체제단속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인간적인 공개처형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인식은 매우 낮다.

한편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내에서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귀순자 안명철(1994.10 입국)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는 약식 재판에 의한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위부원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¹⁵⁾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탈출하다가 체포되는 경우이다. 정치범수용소의 경비대원으로 근무(1983.5~86.6)한 경험이 있는 귀순자 최동철(1994.12 입국)은 1985년 「11호 관리소」(함북 경성 소재)에서 할머니, 아들, 손자 3명 등 5명의 일가족이 도주하다 3일만에 체포되어 공개처형되었다고 밝혔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전체 정치범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가운데 기관총,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경비대원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어른 2명은 교수형,

15)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6.7.9.

아이들 3명은 총살형에 처해졌으며, 수용소의 보위부원들은 공개처형 직후 정치범들로 하여금 죽은 시체를 향해 돌을 던지게 함으로써 “탈출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감을 조성했다.¹⁶⁾

또한 귀순자 안명철은 정치범의 체포·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 전보위부 3국(예심국)에서 행해지는 자의적인 비밀처형의 실상에 대해서는 7국의 보위부원·경비대원조차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람의 기름을 짜서 화장품을 만든다”든가 “사람의 힘줄로 채찍을 만든다”는 등의 3국내 인권유린 실상에 대한 소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그는 경비대원들 중에는 개인적인 공명심과 입신을 위해 정치범을 살해하고 이를 탈출기도로 조작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¹⁷⁾

교화소 내에서의 공개처형 실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귀순자 이순옥(1995.12 입국)은 개천교화소에 수감(1987.12~92.12)되어 있는 동안 9번의 공개처형(남자 7명, 여자 2명)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공개처형은 교화소 부소장의 주관하에 수감자들을 집합시킨 가운데 교화소내 공장건물 구내마당에서 진행되었다. 1990년 평양 돌격대소속 취사원 출신인 ‘서영순’(당시 23세, 여자)은 파손된 생산품을 숨겼다가 적발되어 공개처형되었다.¹⁸⁾

최근 공개처형이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순 모방범죄가 증가하고 오히려 반대세력을 조장한다는 인식에 따라 공개처형이 다소 주춤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공개처형이 감소하는 대신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고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편으로 비밀처형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생

16)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6.7.8.

17)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6.7.9.

18)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6.6.12.

명권의 유린에는 근본적으로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2. 신체의 자유

불법구금 및 고문

신체의 자유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근원적인 요구인 동시에 인간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체의 자유, 즉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 신체의 자유에는 사전영장에 의하지 않은 불법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처벌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해서는 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5조). 그리고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으며(제7조),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않고(제9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하여야 한다(제20조)고 규

정되어 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84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 처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일명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3년 「비엔나선언」에서는 어떠한 상황, 특히 전쟁시에도 ‘고문방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유엔회원국들의 조속한 동 조약에의 가입이 요청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외형상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79조). 또 북한은 1992년 1월 15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을 선언(제4조)하고, 과학적·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형사사건을 처리토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및 증거재판주의를 채택(제35조, 제36조)하는 한편, 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에 신중성을 강조(제11조)하는 등 인권보장 측면에서 외형상 진일보한 면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에서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을 자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처우가 만연되어 있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나 당 정책을 어겼을 때는 처벌의 가혹함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범죄용의자의 초보적 인권까지 유린하고 있다. 1998년에 국내에 입국한 귀순자들도 이와 같은 실정을 증언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수사관과 예심원들의 증거조사, 구속처분, 수색·압수 등의 강제처분시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전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제40조, 제100조, 제111조, 제129조). 다만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색·압수할 때에는

각각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속처분결정서나 수색·압수결정서를 제시하도록 하여(제107조, 제132조)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체의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을 뿐이다.

교화소내의 인권유린

북한의 구금시설은 정치적 범죄와 경제적 범죄 등 정치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범죄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970년대 초 북한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사회안전성으로부터 국가안전보위부(당시 정치보위부)를 독립시켰다. 이것은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을, 사회안전성은 기타의 범죄자를 취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한편, 상호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 등은 일반적인 감옥형태인 ‘교화소’에 수용된다. 교화소는 사회안전성 교화국에서 관리하며, 교화소·노동단련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표 3-1> 참조). 반면 정치범들은 국가안전보위부 농장지도국이 관할하는 ‘관리소’에 수용된다. 이 관리소는 정치범수용소로 통상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린다. 사회안전성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은 ‘관리소’로도 불린다. 예를 들어, 11호, 13호, 17호, 18호 등으로 구분되는데, 함경북도 경성 소재의 11호는 현재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표 3-1> 북한의 구금형태

범죄유형	경제범·강력범 등	정치범
관리기관	사회안전성 교화국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수용시설	교화소 노동단련대	관리소

‘교화소’는 일반 교도소와 같은 형태의 감옥이며, 사회안전성이 관리하는 구금시설 가운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재판소에서 사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자를 수감하는 곳이며, 대략 도 단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귀순자 안선국(1997.5 입국)은 북한당국이 최근 식량난과 교화소내 사망률 증가를 이유로 강원도 원산 천내교화소와 신의주 제3교화소를 통합하는 등 교화소를 통폐합시키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교화소에 수용하기에는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들은 ‘노동단련대’(과거 ‘노동교양소’)에 보내 1~6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귀순자 안선국(1997.5 입국)은 1995년 8월 교양소가 없어지고 시·군 안전부 관할 ‘노동단련대’(북한주민들은 ‘노동깡판’이라고 별칭)가 생겨났다고 증언하였다. 주로 절도범, 집단생활 이탈자 등이 수용되는 노동단련대는 500~2,500명 정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도 단위로 2~3개씩 전국에 약 12~16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 노동단련대에서는 공민증이 박탈되지 않는다.

중전의 ‘교양소’는 범죄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교양시키기 위하여 수용했던 곳이다. 이들에게는 1~6개월의 수용기간 동안 무보수노동(농사, 건설현장 등)과 교양을 실시했다. 교양소는 대부분의 시·군에 설치되어 있었고, 각 시설은

100~200명 정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학교생활 불량자 및 청소년 등이 많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청소년교양소’로도 불리웠다.

이 외에도 북한에는 집결소라는 것이 있다. 집결소는 교화소와 유사한 형태로 ‘사회주의범무생활지도위원회’ 등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설치한 ‘청소년구호소’,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불량아, 사건 계류자 등을 단기간 수용하였다.

북한은 1995년 4월말 「평양축전」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한 AI에 북한에는 「사리원교화소」를 포함하여 3개의 교화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곳에는 약 800~1,000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국가사범 약 240명은 「형산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AI에 언급한 「형산교화소」는 교화소가 아니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맞은 편 금문산 기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안전성 검찰국과 재판국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안전성 검찰국과 재판국은 범죄자들의 예심을 담당하는 곳이다.

일반주민들의 교화소내 생활과 인권유린실태에 대해서는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입국한 이순옥(1995.12 입국)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¹⁹⁾ 개천교화소는 원래 국가안전보위성 관할 남신의주 소재 여자교화소가 1982년 3월 개천으로 옮겨오면서 사회안전성 관할 관리소로 바뀐 것이다. 북한내 최대규모 중 하나인 개천교화소의 전체 수용능력은 600여 명(1개 감방에 20여 명)이다. 그러나 개천교화소에는 약 6,000명의 죄수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000여 명의 여성수감자도 포함되어 있다. 1개 감방(가로·세로 각각 약 8m, 6m)에는 보통 80여 명이 수감되어 있다. 수감자 대부분은 암거래·절

19)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6.7.12.

도 등으로 인해 잡혀 온 경제범이며, 강도·살인범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수감자 중 80% 이상이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가 수감되는 경우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처리가 된다.

개천교화소에는 남성 수감자쪽에는 22개, 여성 수감자쪽에 11개의 각종 공장이 있다. 각 공장은 1개 교화반(300명 내외)으로 구성되며, 그 밑에 조(40~50명), 분조(4~7명)가 있다. 여성수감자쪽의 공장으로는 구두공장, 포화공장(북한군 신발 생산), 피복공장, 일용공장, 수출공장, 재단공장 등이 있으며, 이 공장에서는 주로 사회안전성 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피복, 구두, 가방, 혁대, 권총집, 군견 목걸이 및 입마개 등과 수출품으로 편물, 조화, 속옷(위탁 가공), 재털이 받침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같은 수감자의 노동으로 인해 전국 각지의 교화소를 관리하는 사회안전성 교화국의 전체 수입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증산교화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축산, 농사, 봉제 등과 관련된 강제노동이 행해지며, 특히 군복 등 상당한 양의 군수물자가 교화소 죄수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다. 이 곳에는 주로 미성년자들과 여성들이 수감되며, 남녀의 비율은 거의 같다. 또한 「원산교화소」는 규모가 방대하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생필품은 북한의 경공업 생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산교화소 산하에는 여러 지방교화소가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 수감자의 경우 출소할 때까지 한 공장에서 한 가지 품목의 생산에만 참여한다. 북한의 노동법상 규정은 일반노동의 경우 1일 8시간, 재소노동은 1일 10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수감자들은 오전 5시에 기상하여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하루 17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다. 교화소 외부지역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1년에 2회(봄·가을 각각

10일 정도, 파종 및 수확시) 정도이며, 신체건강한 사람만을 차출하여 내보낸다.

식사로는 강냉이 300g(규정은 700g)과 염장배추국이 제공되며, 작업량 미달시 240g, 3회 연속 미달시 180g, 독방·예심방 수감시 90g으로 배급이 줄어든다. 피복은 10년에 1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식량난으로 교화소를 운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교화소를 통폐합하는 한편, 경미한 범법자들을 교화소보다는 노동 단련대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교화소 내에서 수감자가 '생활준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나 주어진 작업량을 3회 연속 미달했을 경우, 그리고 생산물품을 파손하거나 잘못된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에는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독감방'(높이 1m, 가로·세로 60cm)에 수감되며, '미달밥'(1일 90g)이 배급된다. '예심방'은 계속해서 잘못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활준칙을 어기는 수감자들이 감금되는 곳이다. 이 곳에서는 사회주의 교화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벌(구타·고문)이 이루어지며, 심한 경우 처형이 결정된다.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북한형법의 반인권성

1987년 개정된 북한의 형법은 그들이 말하는 북한형법의 계급적 본질과 임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북한은 형법을 통해 사회주의제도를 부정하는 '계급적 원수'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실시하고 김일성 부자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요소라도 가장 단호한 징벌을 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법의 해석 및 적용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높은 정치사상성이 요구되므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입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형법은 범죄인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특히 대다수 국가의 형법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가 누락되어 있거나 자의적인 해석 또는 과도한 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적 기능은 극히 미약하다.

첫째, 북한형법은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즉 “범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동일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그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라고 규정하여(형법 제10조) 유추해석을 허용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언제든지 범죄인으로 규정·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북한형법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고 소급효를 인정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을 부인하고 있다. “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해서는 앞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형법 제42조) 범인은 죽는 날까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예비·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방조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해서는 기수범과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형법 제15조), “(범죄를) 추진자와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형법 제18조) 범죄의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넷째, 김일성 부자를 비방하거나 저항하는 행위는 제44조부터 제55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무조건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되어 사형이나 전재산 몰수형에 처해진다.

다섯째, 은닉범·불신고범·방임범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형법 제54조, 제55조), 반국가범죄의 경우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연좌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형법의 반인권성·전근대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개인의 권리를 국가에 대항하여 최종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재판절차의 공정성은 이와 같은 변호인 선임권이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인권과 관련한 변호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변호활동이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재판의 공정성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대다수 국가의 헌법,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 등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실현방법과 절차에 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영업자라기보다 당의 지도를 받는 변호사회의 직원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북한 변호사제도의 한계를 잘 드러낸다.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변호사들이 변호사회의 업무배분에 따라 주민의 상담에 응하

고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주민들에 교육하고 선전하는 일종의 정치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변호사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변호사법 제 11조). 이는 북한의 변호업무가 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민에게 정확하게 침투되어 실시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보다는 범죄혐의사실을 실토하도록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불공정 재판절차

북한에서는 노동당과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보위기관의 예심원이 예심하도록 하고(형사소송법 제74조), 도·직할시 재판소를 제1심관할로 정하여(형사소송법 제181조) 일반형사범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성이나 검찰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간첩이나 반당·반체제행위자 등 반국가범죄자를 검거했을 때에는 국가안전보위성으로 그 사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치적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가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유린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재판기관은 국가기관 체계상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내각을 상부구조로 하여 그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불과하다. 즉 북한의 재판기관은 다른 국가기관의 사업지도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만큼 인권침해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북한은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적

소양이 없는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른바 인민참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인민참심원제는 형식상 영미의 배심원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제도는 사실상 노동당의 사법적 통제를 위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소자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재판심리에 노동자, 농민의 대표가 참가한 때에는 그가 먼저 피소자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게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고 인민참심원의 역할을 규정한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범죄의 예방 및 처벌을 위해 각 단위마다 설치한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모든 범죄자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군 단위의 경우, 군 당책임비서, 군 행정경제위원장, 군 보위부장, 군 안전부장, 군 검찰소장으로 구성된 ‘군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형식상 사회주의 법 준수교육 및 범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난 등으로 사회일탈행위가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주민 뿐만 아니라 당·정 간부들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범과 일부 경제범을 수감하는 사례가 흔하다. 귀순자 김운학은 그의 친구였던 ‘김덕철’이 1988년 2월 말 경에 중앙당 신소과에 “공화국 경제정책이 현 실정에 맞지 않으며 경제발전을 하려면 개인기업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비밀투서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는 얼마 후 검거되어 행방불명되었으며 그의 조모·가족·삼촌 등 일가족은 통제구역으로 추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귀순자 이영심(1998.6 입국)은 “신소는 헌법에 명기되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제도이나 군, 시, 도를 거쳐 중앙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이 자

신이 화를 당할 것 같으면 무시하며, 신소한 자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척 하다가 중국에는 유일사상체계에 저촉된다고 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²⁰⁾

4. 평등권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평등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차별금지과 기회균등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제6조),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조). 이러한 권리를 평등권이라고 한다.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함은 물론이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평등권은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서 누려온 천부적·전국가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평등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능 내지 방법으로서 기본권 전반에 공통으로 작용되어야 할 기능적·수단적 권리라는 특성을 갖는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고용, 임금, 근로조건, 과세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참여와 활동,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출신성분, 성별, 기타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문화적 영역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20)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8.9.9.

권리, 교육의 기회균등은 물론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모든 제반 사회 시설을 균등하게 누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

1998년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헌법 제65조) 의형상 모든 주민의 평등한 권리 향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이 헌법상 규정된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북한은 1958년 8월 사회주의적 제도개혁을 완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주민의 노동자화’를 목표로 그 해 12월부터 전체주민을 출신성분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는 전 주민에 대해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치성향을 파악하고 소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북한이 시도한 사회주의적 계급정책이었다.

출신성분 구분작업으로는 1958년 12월~1960년 12월에 실시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1967년 3월에 실시한 ‘주민재등록사업’, 1967년~1970년 6월에 걸쳐 조사한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그리고 1980년 4월~1980년 10월에 걸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 1981년 1월~4월에 걸친 ‘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 1983년 11월~1984년 3월에 걸친 주민증 갱신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80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실시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에서는 13개의 부류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3-2> 주민성분 조사사업

사업명칭	시 기	내 용
중앙당 집중지도	'58.12~'60.12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이주
주민재등록	'66.4~'67.3	100만 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 성분을 분류(직계 3대·처가와 외 가 6촌까지 내사)
3개 계층 51개부류로 구분	'67.4~'70.6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 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재분류
주민요해 사업	'72.2~'74	남북대화와 관련, 주민동태를 조사 · 파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공민증 검열사업	'80.1~'80.12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갱 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80.4~'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 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81.1~'81.4	북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 여 동향 감시자료를 과학화
공민증 갱신사업	'83.11~'84.3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출처> 통일원, 『'95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5), p. 275.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6·25전쟁 이후 ‘주민등록그룹빠’를 조직하여 출신성분, 친척관계, 전쟁경력 등을 기초로 8차례에 걸쳐 주민성분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표면적으로 성분정책을 완화시키고 복잡군중들을 포용한다는 김정일의 ‘광폭정치’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의 진위와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민성분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폐지 또는 추가되는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주민의 성분분류 세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컨대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민족자본가나 지주 등은 현재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별로 새로운 사회집단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이 통치자로서 모습을 드러낸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성분완화정책의 시달에 따라 당시의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부류를 폐지 내지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전 주민을 크게 핵심군중(핵심계층), 기본군중(동요계층), 복잡군중(적대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귀순자 박창덕(1998.2 입국)과 이정옥(1998.2 입국)은 북한의 성분구별정책 내지 계층분류는 정치적·사회적 지위와 직업·결혼 등의 중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은 사석에서 자신들을 가리켜 ‘인민’보다 ‘백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당·정간부들을 ‘양반’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한 바 있다.²¹⁾

핵심군중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으로 전체주민의 약 28%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김일성·김정일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과

21)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8.5.15.

약 20만 명(인구의 1%)으로 추산되는 고급간부들, 그리고 나머지 26~27%의 중·하위급 간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부분 항일혁명투사와 그 가족, 한국전쟁시 피살자와 전사자의 유가족들이다. 북한은 핵심군중의 자녀들을 위해 각종 특수학교와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고급간부들은 호화주택에 살면서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고, 최신 유행품 등을 소유할 수 있다. 자가용, 개인전화도 소유하고 있고, 외국출판물도 구독하며, 외국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살면서 당·정·군 간부 등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특혜를 받고 있고, 진학·승진·배급·거주·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혜를 누리며 세습 신분집단을 이루고 있다.

기본군중은 북한체제의 핵심군중에 속하지 않고 당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체인구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하급간부나 기술자로 진출하고 있으며, 극도로 제한된 수입과 배급식량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대부분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에 살고 있는 이들은 불충분한 보건 혜택 속에 특별허가 없이는 평양을 여행하지 못한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핵심군중으로 신분이 상승하기도 한다.

복잡군중은 계급적 적대자들과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집단이다. 복잡군중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7%를 차지한다. 이들은 과거 지주 및 자본가 가족, 일제시 공직자 가족, 종교인 및 부역자 가족, 당원자격을 박탈당한 자, 간부에서 철직된 자, 체포 및 투옥자 가족, 정치범 출소자, 경제사범,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등 북한의 권력투쟁에서 희생당하거나 소외된 엘리트와 관료 출신 등으로 대학진학, 입당, 군장교 등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박탈된다.

<표 3-3> 3계층 51개부류 분류표

3계층	51개부류
핵심군중 (전체인구의 28%)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당·정·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반일투쟁에서 희생된 자의 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6·25 당시 비전투원으로 희생된 자의 유가족), 혁명인텔리(8·15 이후 북한이 양성한 인텔리), 6·25 당시 피살자 가족, 6·25 당시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인민군 현역장병의 가족), 영예가족(6·25 당시 부상한 상이군인)
기본군중 (45%)	중·소상인, 수공업자, 소공장주, 하층접객업자, 중산층 접객업자, 무소속 남한출신, 월남자 가족(제1부류),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 가족(제2부류), 월남자 가족(제3부류), 중국귀환민, 8·15이전 인텔리, 안일·부화·방당한 자, 접대부 및 미신 숭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복잡군중 (27%)	8·15 이후 중소기업가·부농·상공업자에서 전락된 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행위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관복무자, 체포·투옥자가족, 간첩관계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개인재산을 완전 몰수당한 자본가

* 1970년 당시 주민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분류한 것임.

<출처> 통일원, 『'95 북한개요』, p. 268.

출신성분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성분정책은 기본군중의 사회적 진출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성분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부류는 역시 복잡군중에 속한 사람들이다. 귀순자 이순옥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분기별로 초급당비서, 부비서, 세포비서 등이 성분심사를 하고 있으며, 성분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다(<표 3-4> 참조).

일반적으로 당원, 노동자, 사무원, 전사자가족, 영예군인 등은 그 기준에 따라 핵심군중이나 기본군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혁명인테리는 기본군중 또는 복잡군중으로 분류되고 있다.²²⁾

<표 3-4> 성분 분류표

특별계층	혁명열사유가족·애국열사유가족(1~2%)
핵심군중	노동당원, 전사자가족(전사가 확인된 경우), 영예가족, 후방가족, 고농, 빈농, 사무원, 노동자
기본군중	노동당원, 사무원, 노동자, 영예가족, 전사자가족, 남한출신(의용군입대자), 신인테리
복잡군중	인테리, 남한출신(입북자·피난민), 포로귀환병, 월남자가족, 중·소상인·수공업자 출신, 중국귀환민 출신, 과거 접대부·미신송배자 가족, 유학자·지방유지 출신, 경제사범, 구인테리
감시대상	과거 지주·중소기업가·부농 가족, 과거 친일·친미행위자 가족, 과거 적기관복무자 가족, 종교인출신 가족, 출소자, 출당자, 철직자, 체포·투옥자 가족

* 귀순자 이순옥의 증언에 의거하여 작성.

복잡군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고용·교육·주거·의료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강제이주를 통한 격리수용 및 독재의 대상, 항시 동태를 감시당하는 고립대상, 집중적인 교양학습을 통해 체제순응적으로 교육받는 포섭 및 교양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귀순자 김원형(1997.5 입국)은 복잡군중은 국경지역인 신의주에 거주할 수 없으며, 전국의 시에 거주하는 비율도 매우 적다고 증언하였다.²³⁾

22)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6.7.12.

23)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7.8.21.

<표 3-5> 복잡군중 분류표

독재대상	독재대상자는 현재 북한체제와 제도를 전복하려는 부류로 이들은 일반 주민들과 분리시켜 소위 '안전지대'로 불리우는 산간고지와 탄광지대 등 특수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있음.
고립대상	고립대상자는 상당히 위험한 대중으로서 일단 유사시에는 남한에 동조 내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자들이며 일반군중에 공개하여 집단 감시케 함.
포섭대상 및 교양대상	포섭대상자들은 일부 동요계층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탈정도가 경미하여 체제·이념에 다시 순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류이며, 교양대상자들은 사상교양을 강화하면 전향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보는 유동적인 부류임.

북한은 성분에 따라 교육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실력이나 본인의 의사와는 거의 상관 없이 지망대학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 중앙당 부장, 내각 각료 등 김정일의 측근이나 소위 간부 자녀는 무시험 특별입학이 허용된다. 귀순자 박수현(1993.10 입국)은 김일성·김정일의 지시로 입학이 결정되는 고위간부의 자녀들이 '교시받은 학생', '지시받은 학생' 또는 '말씀받은 학생' 등으로 불린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김일성종합대, 김책공대 등 주요 대학의 입학 예정자는 직계존비속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의 입학예정자는 직계존비속 4촌까지 성분조사를 받는다. 성분조사 과정에서 작은 결점이라도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된다. 입학이 취소된 남학생은 군대에 입대하여 7~10년간 복무하여야 하고, 여학생은 생산기업소로 배치된다.

연좌제 등 출신성분에 따른 대학입학 통제실상은 많은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실제로 대학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정밀한 신원조사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입학이 허용된다. 귀순자 김성(1990.6 입국)은 자신이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전 기간 동안 전교 1등을 했지만 1979년 3월초에 있었던 대학시험에 파견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가 다니던 학교 교장과 어머니가 재직하던 학교 교장이 대학교 모집처에 찾아가 문의한 결과 “학생의 외삼촌이 1946년 12월경 월남을 한 ‘10호대상’(월남자 가족)이기 때문에 파견장이 안나갔다”는 것이다. 또한 귀순자 임영선(1993.8 입국)은 1988년 4월 ‘군관’(장교)이 된 후 총정치국 간부에게 대학진학을 위해 뇌물을 상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성분이 좋지 않으니까 대학진학을 포기하라는 언질을 받은 바 있다고 증언하였다.

연좌제에 의한 통제실상은 이산가족들에 대한 적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은 전체인구의 25~30%를 차지하는 방대한 집단인 이산가족들을 ‘월남자’로 분류하여 복잡계층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조상들의 과오, 일제 때나 한국전쟁 때 있었던 과오를 가지고 아직도 후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귀순자 정재광은 1975년 동창인 ‘김룡각’(당시 고등중 3년)의 가족이 부친의 6·25 당시 치안대 가담사실로 인해 자강도 용림군으로 추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국군포로였던 양순용에 의하면,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지금까지 송환되지 않은 채 탄광이나 임업소에서 신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노역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국군포로들은 신분상으로 여러 가지 학대를 받고 있는데,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자녀들도 직업과 사회진출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실상 성분차별이 대물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당국은 이같은 성분정책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의 성분정책 완화지침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성분정책으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귀순자 주영희(1997.5 입국)와 서창은(1997.8 입국)은 50~60%의 일반주민들이 스스로 본인의 성분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²⁴⁾

북한이 1987년에 제작·상영한 영화 『보증』은 북한에서 차별적인 성분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물론 이 영화는 김정일의 성분완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차별적 성분정책을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한국에 가족을 둔 한 노동자가 성분문제로 각종 불이익을 겪으면서 사회적·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다.

요컨대 북한당국은 성분분류작업을 통해 반동계급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출신성분에 따라 의식주 배급, 사회적 이동 허가 및 법 적용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장애인들에 대한 박해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직 국제적인 규약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1993년 세계 비정부간기구(NGO) 포럼은 ‘장애인들에 대한 기회 균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유엔회원국들에게 국제규약의 추진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1993년 「비엔나선언」에서도 육체적·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한 기회 균등 보장을 촉구하였다.

세계에는 약 5억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북한에도 한국동란 등으로

24)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7.8.22, 10.16.

인해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장애인들을 강제 이주시켜 이들을 집단 관리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평양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평양을 국제도시로 꾸미기 위해 장애인들을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게 지방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하에 평양 시내에 거주하던 신체장애자·정신병자와 그 가족들을 지방으로 강제이주시켰다.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에서도 장애인들을 산간 오지나 외딴 섬으로 추방하였다.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귀순자들 또한 장애인들이 불구의 정도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거주를 제한받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가 하면 신체적 특징에 따라 혹독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황장엽은 1960년대에 김일성이 “난쟁이들이 종자를 퍼뜨리면 안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두라”고 지시함에 따라 함남 정평군에 난쟁이 수용소가 설치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귀순자 윤성철(1996.3 입국)은 장애인들이 영구 피임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만 당의 승인하에 평양 등 외국인이 방문하는 특정지역을 제외한 일반 거주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고,²⁵⁾ 귀순자 오수룡(1995.3 입국)은 난쟁이인 ‘김기화’가 함북지방 산골지역으로 추방당하였다가 거세당한 후 귀환하였다고 증언하였다.²⁶⁾ 귀순자 정재광도 1978년경 모란봉구역에서 불명의 안전원이 평양에서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16세 가량의 반신불수인 아들을 독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²⁷⁾ 귀순자 강철환과 이순옥은 1998년 2월 2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에서 난쟁이나 장애인들게 불임수술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25)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6.7.16

26)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6.7.12.

27)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6.7.18.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평양 등 대도시에서 장애인들을 찾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5. 자유권

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제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는 평등과 함께 인권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요소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요소이다. 자유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방어적 공권임과 동시에 초국가적인 인간의 권리임을 의미한다.

자유는 자연법상 인간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서 국가는 자유권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못하며, 모든 국가는 자유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자유권의 보장은 초헌법적인 것으로 인류보편의 원리이다. 또한 이는 입헌주의적 헌법의 최고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헌법개정의 내용적 한계가 된다.

거주이전·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인간존재의 본질적 자유로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지니고 있는

의의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신체적·심리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상승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유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해외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3조).

그 동안 북한은 주거와 여행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로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사회적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다. 북한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묵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9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75조)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통제의 목적상 자유로운 주거이전 및 여행은 여전히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즉 범규정과 실제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다. 북한주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여행이 불가능하며,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공민증, 신분증, 신임장, 출장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러한 증명서류를 소지한다고 하더라도 여행범위는 크게 제한되고 있다. 지방주민이 평양으로의 여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회나 행사참가, 대학입학 등 특별한 자격이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성분이 확실해야 한다. 외국방문자의 경우에도 여행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다.

아시아감시위원회에 의하면, 1980년대 들어 제한적이거나 외국인의 북한 방문이 허용된 후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들을 방문한 미국인 여행자들에게 자기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기차나 버스편으로 시외지역으로 여행할 수 없으며,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여행하려면 여행에 필요한 통행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귀순자 김창화와 어성일(1987 입국)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14일 전에 해당 단위의 직장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1차로는 노력동원과 사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2차로는 해당 지역 사회안전성 증명서 발급과에 3일 전에 여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위험분자, 감시자, 동향불순 등록자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보위부 종합과에서의 대조·확인과정을 거친 후에야 해당 직장 초급당비서를 통해 여행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 귀순자 김경일(1998.6 입국)은 나진·선봉지역의 경우 이동시 6개 정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다른 지역보다 통제가 더 심한 형편이며, 특히 후장지구 등에 세관을 설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²⁸⁾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여행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민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사회안전성으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증에는 귀향일시가 기재되며 귀향 4일 전에 여행지 역전 분주소에 신고해야 승차권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타지에 있는 부모·형제, 친지 등이 사망했을 경우 제 시간에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부정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능력과 기호에 따른 주거지 선택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국의 허가 없이 자의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다. 주거지를 허가 없이 옮기면 공민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과 식량배급 등 모든 사회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받는다. 귀순자 지만철의 증언처럼 교화소에서 출소한 자의 경우 직업과 거주지가

28)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8.9.8.

제한되고 감시대상이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이 이동과 여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생산과 노동을 중시하고 여행을 끝 노동력 상실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여행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해이해지기 쉽고 정보교환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자유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997년 8월 제49차 회기에서 북한당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1998년 8월 제50차 회기에서는 북한당국에 대해 출입국 등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북한이 거주이전 및 이동·여행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얼마나 잘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감시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이주시키고 있다. 정치범들이나 체제불만자들에게 행하는 강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자강도와 양강도 등 새로 신설된 공업지대나 탄광지대, 그리고 최근 나진·선봉경제특구와 같은 지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키기도 한다.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6·25 전쟁 이후 전쟁준비 및 인구조절 차원에서 3~4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평양시 주민소개작업을 실시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직후 평양시민 중 성분불량자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주시켰으며,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전쟁준비를 구실로 상당수의 평양시민을 지방으로 소개시켰다. 그리고 1994년에는 '평양시민증'을 발급하면서 직장변경자, 행실불량자, 처벌대상자 등을 지방으로 소개시켰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뇌물수수 등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식량구입 및 장사를 위한 이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다녀온 방문객들은 각 기차역에서 보따리를 든 많은 승객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귀순자 최동철은 1980년대에는 추석·한식 등에만 여행증명서 없이 타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평상시에도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식량구입을 위한 무단 또는 불법적인 여행이 크게 늘었다고 증언하였다.

김원형과 안선국(1997.5 입국) 등은 철도역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중국과의 접경도시(신의주 등)에는 접경구역으로 비교적 식량난이 적을 것이라는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여행증을 갖지 않고 이동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손쉽게 여행증을 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²⁹⁾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개인의 알권리, 언론기관에의 접근 및 이용권, 반론권, 언론기관 설립권 등은 물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도 포괄한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에는 국경의 제한 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천명하고 있다(제19조). 또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29)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8.8.20~21.

사람은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국경에 관계 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의사표현 및 정보추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제19조).

북한에서는 “공민은 언론, 출판 …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67조 1문)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은 비판이나 정보 제공 등 본래의 기능을 도의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위한 주민선동에만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북한주민 모두를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즉 언론의 자유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할 때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언론은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자이며 선동자인 동시에 조직자이며 교육자로서만 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언론은 오로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 언론은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지도원리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의 모든 신문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부자에 관한 기사는 신문의 1면에 게재되며 김부자의 이름은 별도의 굵은 활자로 인쇄된다. 모든 기사의 내용은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주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당에 대한 비판이나 기본적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전무하다. 반면 한국과 미국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으며, 사회안전성은 이를 3개월에 한 번씩 검열

하고 있다. 만일 봉인이 뜯겨져 있으면 한국방송이나 외국방송을 허가 없이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TV의 경우에도 휴전선 일대에서는 채널을 고정시켜 놓았으며, 국경지역에서는 중국의 TV방송까지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외국언론의 접근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1996년 3월에 발표된 미 국무부의 『'96 각국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북한관련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고, 특히 “서방기자들의 북한방문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 국무부는 이미 『'93 각국 인권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이 일본 언론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북한에 비판적인 기사를 실고 있는 러시아 언론인의 접근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언론은 개인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 기능, 개인보호 기능, 정부감시 기능, 문화전달자적 기능, 오락·광고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노선의 정당화 기능, 인민감사·고발 기능만을 수행하면서 인권침해의 동조자, 은폐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세계정세 변화에 무지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능력과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욕구를 갖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언론역할을 하고 있는 유언비어, 즉 ‘비통’(비밀통신)을 통해 국내사정 및 외부소식을 접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일반주민들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도 극도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1987년 형법에 “사회적 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

어(제105조) 개인적의 의사표현 및 제3자에 대한 전달을 위촉시키고 있다. 귀순자 윤웅은 1992년 4월 함경북도 청진경기장에서 개최된 「4·15 축구경기」 관람 도중 청년 1명이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 김정일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자유를 회복하자”는 내용의 전단 300여 매를 살포하다가 현장에서 국가안전보위원에게 체포되어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당하여 즉사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출판물 역시 사상교양의 전달수단으로서 노동당이 모든 출판물을 직접 관장하며 검열·통제하고 있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모든 출판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김일성의 우상화, 유일사상의 체계화,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의 확립, ‘우리식대로 살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대중동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헌법 제67조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출판물은 김일성·김정일의 치적이나 정부선전용으로만 이용되고 노동당의 대변자로서 대중선동, 대중조직, 대중비판 및 폭로의 기능만을 가진다. 출판물의 내용은 반드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를 지지하고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을 관철하며 혁명적 원칙 등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의 출판은 이와 같은 원칙에 합당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어떤 작품을 쓰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당 선전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만일 북한주민이 이와 같은 검열기준에 위배되는 것을 출판할 경우, 북한당국은 형법 제46조의 ‘반동선전선동죄’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사형, 전재산 몰수, 강제노역 등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받

도록 할 수 있다. 언론이나 출판물에서 노동당이나 김일성 부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귀순자 이영심은 사회안전성, 국가안전보위부와 당기관이 합동으로 1년에 3번 정도 책을 검열하기 때문에 서적을 통한 외부사상의 유입은 힘들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사회주의혁명의 완전한 달성을 위해 복무하는 중요한 사상적 무기이다. 즉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예술은 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요한 이념적 동원매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 결성 이후 북한의 문예정책은 문예작품 창작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준수, ‘당성·계급성·인민성’ 원칙의 관철 등,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문예작품의 내용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한 ‘혁명전통물’, ‘전쟁물’, ‘사회주의건설물’, ‘조국통일물’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히 내세웠다.

1966년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북한사회를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문예분야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즉 ‘주체문예이론’을 내놓게 되었다.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주의를 체현한 ‘공산주의자의 절대적인 전형’으로서 김일성을 직접 형상화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절대화·우상화를 신성한 임무로 간주하였다.

북한 문예정책은 무자비한 통제성을 보이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당 중앙위원회 문화예술부에서 직접 담당하며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의 산하단체인 문예총을 통하여 진행된다. 특히 작품 출판 및 공연에 대한 통제는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통제된다.

이 단계에서의 통제가 작품출판 및 공연의 현실화에 앞선 최종적인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당은 출판 및 공연계획을 직접 통제한다. 출판과정에 대한 통제·감독은 문예총을 비롯한 해당 동맹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며, 공연단체에 대한 일체의 통제·감독은 내각 문화상과 공연담당 부문 사회단체에서 이중으로 수행한다.

검열에 통과되어 검열인을 받아야 비로소 출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는 미술작품이나 음악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소설, 시, 희곡, 무용극, 미술작품, 음악작품 등에는 검열인이 반드시 찍혀야 한다. 특히 김일성의 투쟁업적을 찬양하는 혁명전통작품에 대해서는 지극히 세심한 검열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지도층의 비위에 맞는 작품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가장 큰 검열기준이 된다. 잘못된 것을 통과시켜도 책임을 지지만 김일성을 찬양하는 작품을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부결시켜도 책임을 지게 된다.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이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형태로 행해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아서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0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1조와 22조). 따라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

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공민은 …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헌법 제67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만 허용될 뿐 일반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결사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집단적 소요로 간주된다. 북한에서는 반국가적 목적이 없더라도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흠잡아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형법 제103조)고 규정하고 있어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부 불만을 가진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집회·결사를 행하고 있으며 체포되면 중형을 받고 있다. 귀순자 윤웅은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이 유학생들을 소환하여 사상검토를 한 후 전국 각지의 대학 등에 이들을 분산 배치하였는데, 1991년 5월 김일성대학에 배치된 학생들이 출신 유학국가별로 연계되어 반체제활동을 주도하다가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전원 체포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 당시 그가 다니던 청진 광산금속대학에 배속된 체코 유학생 출신 ‘김동국’(당시 30세)이라는 학생도 이 사건과 연계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귀순자 정재광도 1980년대에 김일성대에서 경제정책 비판 등을 담은 투서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였고, 1983년도 수학부 주도의 투서사건에는 교원도 연루되었다고 증언하였다.³⁰⁾

30)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6.7.18.

북한의 『백과전서』는 “결사의 자유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정치생활의 주인으로 참가하며 결사의 자유는 근로인민대중에게 부여된 확고한 헌법적권리로 되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명시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기구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직 당의 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집회나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결사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조직, 종교결사, 노조, 정당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과 결사는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며, 독립적인 기관이나 결사의 존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북한주민들은 만 6세부터 정년퇴임시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 교육기관,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선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어느 조직에라도 가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단체는 서구식 의미의 이익단체나 압력단체가 아니라 조선노동당규약 제9장 제56조에 나타나 있듯이 조선노동당의 강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을 연결해 주는 인전대’로서만 기능하고 있다.

사회단체들의 주요 목표는 노동당을 보좌하고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치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은 가맹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당의 외곽조직으로 존재하며 대중의 사상교양 선도조직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또한 이들 사회단체들은 주민들에 대한 일차적인 통제 기능 외에 북한당국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운동, 예를 들어 천리마운동 등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운동, 김일

성·김정일의 생일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서의 집단시범, 행진 등에 있어서 주민동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각종 대중조직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다. 즉 노동당은 사회단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상호감시, 비판, 계도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사상과 집단행동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사회단체의 조직을 통해 노동당원과 후원자를 양성한다. 정당으로는 조선사회민주당과 친도교청우당 등이 있으나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의 인전대(引傳帶)로 대중의 사상교약 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사상·종교의 자유

정신생활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사상의 형성과 그 전달, 양심과 신앙의 유지, 학문의 연구 등은 그 성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정신적·사회적 활동의 자유가 체제 자체의 존립과 그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8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수용할 권리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의식·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방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8조).

북한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맑스의 언명에 따라 건국 이래 종교탄압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다. 즉 북한은 종교를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도구'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철학사전』은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억압하는 도구로 리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도구로 리용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기본인식에 따라 과거 많은 종교인들이 성분 불량자로 간주되어 무자비하게 고문을 받거나 처형되었다. 특히 한국 전쟁 직전과 전쟁 중 많은 종교인들이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실종되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반민족적·반혁명적 적대의 대상이 됨으로써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고, 특히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정신적 도구로 간주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당하였다.

1958년부터 시작된 중앙당집중지도사업으로 종교인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불교의 경우 400여 개의 사찰 가운데 60여 개의 사찰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으며, 1,600여 명의 승려와 3만 5,000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기독교의 경우는 1,500여 개의 교회와 30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고, 천주교의 경우 3개의 교구와 5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천도교의 경우도 12만여 명의 신도가 자취를 감추었다. 김일성은 1972년 사회안전성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 버렸고 그밖의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988년 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립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외부에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1월 15일에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불교의 성도절(成道節) 기념 법회를 전국 사찰에서 갖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1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북한종교단 일행은 과거 종교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북한당국이 많은 종교인들을 탄압했음을 솔직히 시인하였다.

1972년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 역시 명시되어 있었으나 아울러 반종교 선전의 자유가 동시에 언급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는 부정되었다. 그러나 1998년 헌법에서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8조). 이와 함께 1992년의 구헌법에서는 이미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삭제함으로써 형식적이거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북한당국이 허용하는 종교의 자유가 갖는 제약 내지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68조 3문).

북한의 경우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법규정과는 달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만 2천여 명의 기독교 신자와 50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는 북한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종교인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조작된 발표는 국제적으로 ‘종교가 없는 나라’라는 낙인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 국무부의 『'97 각국 인권보고서』는 “최근에 북한정부는 외교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종교조직의 형성을 촉진해 왔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기독교 연맹, 조선천주교협의회 등의 종교단체가 있지만 교회·성당, 사찰은 해외 종교인, 관광객 등 방

문책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대외선전용 시설일 뿐이다. 그러나 신축된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인근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1988년 9월 신축된 평양 만경대구역 건국동 소재 봉수교회의 경우를 보면, 평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 참관시에는 만경대구역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당에서 엄선한 40~50대의 남녀 수백 명이 위장예배를 보고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외의 종교인은 존재할 수 없다.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종교탄압정책으로 인해 일반주민들은 종교인들을 무지몽매하거나 정신이상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정치범수용소 등 통제구역에는 과거 종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외부세계와의 접촉 증가와 각국 종교인들의 북한 선교에의 관심 증가에 따라 신앙을 믿는 소수의 종교인이 생겨났을 가능성은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종교적 차원으로 발전되었다. 북한당국은 주체사상에 위배되는 어떠한 사상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근거하여 수령(김일성·김정일)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과 그 창시자인 수령 이외에는 숭배대상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모든 형태의 종교 조직화를 봉쇄하는 동시에 북한주민의 사상 및 양심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김일성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숭배는 단순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머무르지 않고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의 『'96 각국 인권보고서』는 “주체사상과 김일성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숭배는 국가종교(state religion)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숭배행위는 ‘10대원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소위 북한의 '10계명'인 '10대원칙'은 북한사회 내에서 정치범과 사상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북한의 모든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궁극적인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10대원칙'은 발표된 1974년부터 헌법이나 다른 어떤 법보다도 북한사람들을 지배하고 범죄규정에도 적용되는 실제상의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10대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 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10대원칙'은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표현 하나까지도 통제하고 제어하는 거대한 규범이다. 이 규범을 어긴 사람들은 정치범 또는 사상범으로 지목되어 처벌된다. ‘10대원칙’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범·사상범으로 몰아부친 후 그에 맞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컨대 인민학교 2학년(9세)의 어린 학생이 교과서에 있는 김 부자의 얼굴에 연필로 낙서를 했다는 죄로, 또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도배지로 사용했다는 죄로 인해 전 가족이 행방불명되는 사례도 이 같은 ‘10대원칙’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10대원칙’에 따라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간직하기 위해 생명까지 버리도록 강요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도 지속하고 있다. 1991년 평양 근로단체출판사에서 발간한 『혁명적 락관주의에 대한 이야기』(안창환 저)에서는 김일성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지킨 박영덕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박영덕은 서해바다로 조업을 나갔다가 배가 파산되어 가라앉을 운명에 처하자 “수령님의 초상화를 비닐보자기에 정성껏 싸고 또 쓴 다음 자기 몸에 무거운 연추를 달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그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로동신문』(1993.4.28)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불타지 않게 꺼내 오려고 작업장에 들어갔다가 불에 타서 사망한 두 젊은 여성의 죽음을 가리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어 실천한 아름다운 소행”이라고 극찬하였다.

가영환동무가 일하는 동에서 살았던 주순희, 서룡화 동무들은 위급한 순간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초상화를 보위하기 위하여 꽃다운 청춘을 바치었다.……이 소행

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 하는데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지닌 사상정신적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주순희, 서룡화 동무들의 소행에 대하여 보고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영생의 영예를 안겨주시었다.

북한당국은 1997년 김정일의 당 총비서직 승계에 대비하여 ‘10대원칙’ 준수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순교행위를 이전 시기보다 더욱 강화하였다. 북한 중앙방송(1997.6.4)은 1997년 4월 중순에 남포항으로 귀환하던 인민경비대 소속의 ‘부업선’(부업으로 고기를 잡는 배)이 태풍으로 침몰하여 선원들이 전원 사망했으나 배가 침몰하기 직전 선원들이 ‘1호작품’인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구명대에 매달아 띄워 보내 무사히 ‘생환’시켰다고 선전하면서 사회안전부장 백학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한 선원들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같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순교행위는 ‘10대원칙’ 각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10대원칙’은 사상의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강요하는 극도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어느 종교보다도 김일성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신격화로 부자세습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당국은 1997년부터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정하여 경축하는 한편, 그의 출생년도를 ‘주체원년’으로 삼아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부터 ‘주체’ 연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과 생활을 형성하고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법적 안전성을 그 보호범의 것으로 한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7조).

북한에서는 “공민은 …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헌법 제79조)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침해불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은 실생활과 거의 무관하다. 북한이 인식하는 사생활 보호권은 서구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도청이다. 일반주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정·군의 고위간부들의 주택 및 자동차에도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당국은 엄격한 상호감시체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황장엽은 북한 정보기관의 당 간부에 대한 감시는 일반주민보다 심하며, 도청장치까지 동원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김정일이 이같이 고위간부들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에 대해 반기를 들 가능성이 가장 큰 대상으로 이들을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북한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사생활 감시에 따른 공포분위기를 자주 전한다. 지배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정치에 관해 거론·비판하거나 당이 결정해 준 한계 밖에 있는 사항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주택단지 내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 받는 경우가 드물다. 가족들 사이에도 시사적인 문제에 관한 생각을 주고 받는 일은 흔하지 않다.

북한당국은 전 주민들의 사생활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당 정책을 관철시키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 '생활총화제도'를 상위조직부터 하위 인민반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호 비판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 1회씩 실시되는 집단학습제도이다. 북한주민들은 생활총화시간에 개인의 사사로운 생활, 가정생활, 부부관계까지도 낱알이 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북한은 일반주민들의 사생활 감시에 공안조직망을 활용하고 있다. 사회안전성 소속 숙박검열대는 무단숙박과 비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각 가정을 방문하며 검열을 수행한다. 무단숙박을 검열한다는 목적으로 검열대가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사생활 감시에 인민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화재나 불의의 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근로자들은 출근할 때 인민반장에게 집 열쇠를 맡겨야 된다. 인민반장은 불시에 가정을 방문하여 위생 검열, 초상화 검열, 김일성 부자와 관계된 도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군, 구역 간부들이 호구조사를 나올 경우 집 주인의 안내 없이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15~20여 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은 각종 회의를 통해 각 가정의 비

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토록 강요하고 있다. 인민반장이 각 가정을 항상 방문할 수 있고, 사상동향이나 가정사정을 감시·통제할 뿐만 아니라 노력동원·생활총화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인민반장을 가장 두려워 한다고 귀순자들은 증언하였다.

사생활 통제를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노동당과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성 등 억압기구들이다. 피라미트식 위계질서와 당구조하에서 하급당조직이나 하급당원들은 상부의 결정과 지시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다. 당원들은 모든 기관, 단체, 직장에서 핵심적인 정치요원으로 기능하고, 일반주민들을 감시·통제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으로 주민을 동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일반주민들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은 하급당조직이다. 최하 기층조직은 당원 5~30명으로 구성되는 당 세포조직이다. 당 세포조직은 주로 생산단위를 바탕으로 초급당조직, 부문당조직, 시·군당조직 등으로 확대된다.

당 기구 중 당 간부와 당원들을 비롯하여 정당 및 사회단체, 전체 주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통제하는 부서는 노동당 비서국 조직지도부이다. 1974년부터 김정일이 장악하기 시작한 이 부서는 5개부로 나뉘어 국가 전 기관과 해당분야의 당조직을 지휘·통제하는 바, 구체적인 임무는 당 생활지도와 간부들의 인사를 관장하며 간부들의 사생활을 파악하는 등 두 가지이다.

국방위원회 직속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일성·김정일체제 유지의 첩병 역할을 해 왔다. 국가안전보위부는 1974년 2월 '사상부문일꾼 강습회'에서 김정일이 작성해 발표했다는 '10대 원칙'에 대칭되는 10가지 범법규정을 마련하여 체제유지를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 기구는 소위 반당·반체제 주모자 색출·검거, 특정지역내 잠입 간첩 색출,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국경경비와 치외법권 지역 감찰, 일명 ‘종파분자’ 및 정치범들의 특별관리 등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다. 또한 간부와 일반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유사시 변절자와 지지자를 선별하는 ‘사상사찰’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노동당도 국가안전보위부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며, 사회안전성은 업무수행에 있어 국가안전보위부에 절대로 협조해야 한다.

사회안전성은 해방 직후부터 일제잔재와 지주세력을 청산하는 데 앞장섰고, 그 후 남로당계, 연안파, 소련파 등의 숙청에 최선봉 역할을 담당했다. 1961년 4차 당대회 이후에는 독립된 부서로서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노동당의 직명’으로 정치사찰을 담당하여 왔다.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은 국가치안을 담당한 프롤레타리아독재기구로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대주민사찰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즉 이 기구는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체의 요소를 적발·제거하고 전체 주민을 김일성·김정일 1인 독재체제하에 순종케 하기 위한 주민탄압기능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는 사회안전성은 내각의 한 부서로서 중앙기구로는 사회안전성과 성직속기관, 도에는 사회안전국과 도직속기관, 시·군에는 사회안전부, 각 리단위에는 리분주소 체계로 조직되어 있다. 공장, 기업소, 군에도 안전지도원이 파견되어 있다.

6. 참정권

유명무실한 참정권 행사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여 공직에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국민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또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자기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어느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아울러 투표는 공정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률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정부권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1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직접 혹은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른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5조).

북한에서는 김일성 추모의 일환으로 1997년까지 최고인민회의나 당 대회 및 각종 선거 등 일체의 참정권 행사가 중단되었다. 금년도에 김정일이 당 총비서로 취임하였지만 선거가 아닌 추대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참정권은 여전히 제한받았다.

1998년의 수정헌법은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헌법 제6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헌법 제66조). 그러나 북한의 선거는 단지 대내적으로는 노동당에 대한 인민의 신임을 확신시키고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고시하기 위한 선전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후보자 추천과 등록·투표방법, 연좌제에 의한 선거권 박탈 등을 살펴보면 이는 명백하다.

미 국무부 『'97 각국 인권보고서』는 “자유선거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모든 경우 정부는 각 단위 선거에서 단지 한 명의 후보만을 인정한다. 북한정부 통계에 의하면 99% 이상의 투표율에 노동당이 인정한 후보에 대한 100%의 찬성률을 보인다고 한다. 300만 노동당원의 대부분은 당의 소수엘리트가 만든 규칙을 지키는 데 힘쓴다”고 보고하고 있다.

후보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의해 지명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피선거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 북한에서 선거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자유경쟁하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노동당이 주도하는 권력구조와 엘리트 충원구조를 사후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이자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정치적 동원절차이기 때문이다.

선거구마다 1인씩 입후보하는 단일입후보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직장, 사회단체, 주민회의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토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에서 사전에 입후보자를 엄격하게 선별하고 있다. 사민당과 청우당의 후보들도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친 후보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이들도 노동당의 통제하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북한은 『로동신문』(1997.10.5)을 통해 서방식 다당제의 정치구조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를 철저히 배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신문은 아프리카의 콩고, 라이베리아, 카메룬 등 여러 나라들에서 서방의 다당

제를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당파들 간의 치열한 권력쟁탈전과 종족분쟁, 민족분쟁만을 야기시켰다”면서 “서방식 다당제는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게 하는 본보기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혼란과 좌절을 가져오는 화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선거실태

귀순자 오수룡의 증언³¹⁾에 의하면, 선거위원회는 선거 30~40일 전에 구성된다. 선거위원회에는 담당 보위부원 및 안전원, 각 공장기업소 대표 2명, 인민반장 등이 참여한다. 1개 선거구당 필요한 선거담당원은 각 기업소나 인민반 등에서 선출하고, 1개 선거구당 보통 5~6개의 인민반, 즉 120~130세대가 소속된다. 선거위원회가 구성되면, 사회안전성의 선거인명단과 동사무소의 명부를 대조한다. 그리고 공민증을 수거하여 이들 명단과 대조하여 주민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각 인민반에서 선거인명단을 공개한다.

투표는 구역마다 선거를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보통 당일 오전 10시 정도면 어느 정도 완료된다. 선거불참은 ‘위대한 수령’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조차 없다. 타지역으로 출장가는 경우에는 미리 부재자 신고(출장신고)를 하여 출장가는 지역에서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출장자나 의식불명인 환자의 경우는 당세포나 부모형제가 대리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투표율은 거의 100%를 기록하게 된다.

투표함은 지난 1957년까지는 흑·백투표함을 사용해 오다가 1962년부터 찬·반 단일투표함으로 바뀌었다. 귀순자 장기홍(1991.11 입국)에

31)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6.7.12.

의하면, 찬성일 경우에는 용지에 아무 기표를 하지 않고 그대로 투표함에 투입하면 되고, 반대일 경우에는 투표장에 비치된 연필로 반대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담당원이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연필도 없어 반대 투표는 나올 수 없다고 귀순자 김원형(1997.5 입국)과 주영희(1997.5 입국) 등은 증언하였다.³²⁾ 따라서 거의 매 선거마다 100%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김일성 사망이후 4년만에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선거에서도 기존의 선거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92년 10월 「각급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채택, 찬성 또는 반대투표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제5조)을 신설하였으나 사실상 기표행위에 있어서 반대투표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도 반대할 경우 횡선을 그어 삭제하게 되어 있어 반대투표를 하려면 기재 행위를 해야 하므로 반대사실이 노출되어 반대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7. 여성의 지위

국제인권규약 B규약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남녀의 평등권을 강조하였다(제3조). 1979년 12월 유엔총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채택하였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적 남녀평등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

32)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서 증언, 1997.8.20~21.

문에 여성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여성들이 살아 온 삶은 가부장적 의식과 여성억압적인 제반 구조의 병존으로 인해 사회참여에서나 가정생활에서 여성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1945년 정권 수립 이래로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노동계급화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단행해 왔다. 정권수립 초기에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등의 여성해방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위한 탁아소·유아원의 건립,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조선민주녀성동맹」(이하 여맹)의 창립 등의 제도적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은 여성해방보다는 계급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외연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노동력 동원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 때문에 봉건적인 가부장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부터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체제와 후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대가정' 개념이 도입되고 가부장적 국가관이 강조됨으로써 명목상의 여성해방과 여성의 실제적인 삶 사이에는 현격한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여성의 최고인민회의 진출비율은 20.1%로 다른 선진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상징적 대표성을 의미할 뿐 실질적으로 국정을 감독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은 의석비율만큼 높지 않다. 또한 정치적·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지닌 내각 각료에 등용된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5%에 불과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참여는 사회주의 건설과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노동력으로 충당하기 위해 장려되었다. 일반여성들은 '혁명의 수레바퀴를 끌고 나가는 당당한 근로자'로서 연령(만 16~55세)에 관계 없이 국가계획위원회의 노동수급계획에 따라 당과 정권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직장에 배치되었고, 남녀평등권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남자와 동일한 유해노동·중노동을 강요당했다.

전후 복구사업과 농업집단화가 진척되고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여러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지면서 여성차별은 직종 간의 불평등과 임금 격차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비중과 임금이 낮은 직종에 배치한다는 지침은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심화시켜 경공업·농업·상업·체신·보건·문화·교육 등 상대적으로 '여성성'이 요구되는 특정부문에 여성들이 편중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9.5%(1993)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특정부문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특히 육체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2% 및 51.7%로 남성보다 높다. 정부기관 등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66.4%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노동착취는 심각한 실정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조선민주녀성동맹」(이하 여맹)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당과 국가를 위한 여성동원 및 여성사상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여맹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여성을 동원하고 주체사상과 부자세습체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을 뿐 여권 옹호, 성차별 극복, 사회부조리 해결 등을 위한 사회단체로서의 비판적·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였다.

한편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보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표방하는 사회주의 남녀평등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북한당국은 정권 초기 기존의 남성우월적이며 권위적인 유교적·전통적 가족제도가 사회주의 혁명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억압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연속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속에서 그들에게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위한 외형적인 법적·제도적 장치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가족관계에서 전근대적인 전통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결과로 폭넓은 금혼의 범위, 부성추종의 원칙, 넓은 가족부양의 범위 등 전근대적인 가부장질서의 요소들이 1990년 「가족법」에서 법적 규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는 주장과는 달리 가정에서의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가사가 하나의 노동이라는 인식이 부재한 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이 잔존해 왔기 때문에 북한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노동의 주체로 사회참여를 하면서도 과중한 이중부담을 안고 생활해 왔다. 이같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본래 녀자의 본분은 어린애들을 기르는 일”이라는 김일성의 언급과 “요리란 녀성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이며 녀성들의 타고난 의무이다”라는 여맹의 규정에도 잘 나타난다.

더욱이 1980년대이후 북한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사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조치들이 실질적으로 퇴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직장생활, 사회교양에 더하여 가사노동을 전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여가시간은 전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늘 과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잔존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남존여비사상은 북한 여성의 삶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부권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귀순자 홍금실씨의 증언에 따르면 가정내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통계자료는 나와 있지 않다. 가정 폭력이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는 점은 가정폭력이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1992년무렵부터 식량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경우 경제사정이 악화될 경우 여성의 삶이 더 위협받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제한된 음식물은 우선적으로 아버지, 아들, 딸의 순서로 주어지게 되며, 어머니인 여성은 항상 마지막 순서가 되게 된다. 또한 귀순자 이옥금, 김찬옥, 홍금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식구들의 식량을 구하는 것이 여성의 주요 책임으로 부각되면서 여성은 이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며, 가정폭력의 피해대상이 되는 경우도 증가하게 되었다. 주부들은 가족들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폭력과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순옥의 증언에 따르면, 식량배급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자 어린 아이들을 위해 협동농장에서 강냉이를 훔치다 적발된 주부에게 15년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누적된 경제난이 연속된 자연재해로 극도로 악화되면서, 식량뿐만 아니라 생필품, 의약품들을 구하는 것이 주로 여성들의 몫으로 남게 되자, 여성들은 이를 구하기 위해 각 지역을 떠돌아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국경을 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여성들이 국경지역에서 거래되는 현상도 증가하게 되었다. 북한여성들이 식량난을 피해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기도 하지만, 조직적인 여성인신매매단이 북한내 여성을 중국으로 밀거래하기도 한다.

가장 기본적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성폭행이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입당 및 처우개선을 미끼로 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왔다. 당 간부 등이 부하인 여성직원을 유혹하여 성폭행을 한 뒤 그 대가로 당원 자격을 주는 일 등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당 간부 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는 여성을 성과 향락의 도구로 인식하는 권력층의 일반적인 여성관을 반영한다. 이는 북한에 ‘간부절단기’, ‘무지개’, ‘칼개’ 등 간부들의 성폭행을 비유한 은어가 많이 유행하는 데서 알 수 있다. 간부들의 성폭행이 많은 만큼 이로 인한 처벌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귀순자 서창은(1997.5 입국)은 평남 양덕군 거상리의 초급당비서 및 지배인 등 12명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철직되었다고 증언하였다.³³⁾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순결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도 일상적이다. 성희롱이 일상생활에서 아무

33)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서 증언, 1997.10.16.

제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성희롱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못하며, 여성을 하대하고 정당한 항의도 ‘버릇 없는’ 행동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의 심한 성희롱이나 놀림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

1990년대 이후 외래문화의 유입에 따라 남녀 간의 이성교제가 확대되면서 혼전·혼외 성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결혼적령기 전까지의 금욕을 강조하여 혼전·혼외 성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미혼 임신부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낙태수술 및 자살을 시도하거나, 간혹 상대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IV.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1. 생존권

『정치용어사전』에서 인권을 “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듯이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면서 정부에 의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권의 보장으로 일반주민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완전고용과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는 다르게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많은 북한주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획득 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권 위협의 일차적 원인은 식량 배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은 돈으로 식량을 자유롭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두 번씩 식량을 배급받아 생활하여 왔다. 북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주민통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식량배급제는 「국가식량배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1952년부터 실시되어 오다가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에 의거한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제로 할데 대하여”가 발표되면서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다.

식량배급제는 절대 공급부족인 식량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식량 배급을 통해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무위도식자를 배제하고 노동의 신성함을 앙양하며, 배급자 또는 지배자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생존권 위협의 실태

북한 사회통제의 핵심수단이었던 배급제가 식량난으로 말미암아 붕괴되고 있다. 90년초까지 월2회 식량배급표(15일분)에 명시된 기준량(4인가족 약 10kg에서 절약미, 애국미, 군량미 명목으로 3일분을 공제하고 12일분 양곡)을 배급했다. 1990년에서 1995년에는 배급표의 기준량은 무시된 채 세대마다 월 3~5일분의 식량 약 3kg만 공급될 정도로 식량배급이 악화되었다. 1995년 이후에는 배급이 완전 중단될 정도로 식량배급체계가 붕괴되어 1996년 말부터는 식량을 개인이 자체해결하도록 함에 따라 기관, 공장, 기업소별로 의화별이 사업 등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월 3~4일분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식량난의 지속으로 인한 감량배급은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현재 공식배급체계는 특수공급지역인 평양, 그리고 당료, 고급공무원, 군인 등 특수계층의 생계보장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일반도시 가정의 경우 전체 식량소비량의 약 70%정도를 농민시장 등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공식적인 식량거래를 중지할 경우 주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배급없이 자체로 벌어서 먹고 살도록 방치되고 있다. 대부분 북한주민들은 농민시장이나 암시장, 또는 농촌지역에 있는 친인척으로부터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중앙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이용권, 배급표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구매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사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장사에 몰두하고 있다.

주민들은 식량구입과 장사를 위해 여러 지역을 이동하기도 하고, 공장시설물·고철 등 상품화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여 국경에서

식량 등으로 교환하기도 한다. 일부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돼기밭(부대기밭, 소토지)을 경작하여 잉여식량을 장마당에 직접 내다 팔기도 한다. 식량난과 불법적인 상행위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식량난은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나 도시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곡물이 부족하고 교통수단이 열악한 산간지대인 함경도·양강도·자강도 등의 식량난은 매우 심각하다. 중앙배급제의 붕괴와 국제지원의 일부지역 편중, 에너지난으로 인한 교통수단의 마비로 인해 이 곳 주민들은 심각한 식량부족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1998년 가을 3주에 걸쳐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럽연합(EU)의 연구원들이 18개 팀으로 나눠 북한내 8개지역에서 7세미만의 어린이 1,800명을 무작위로 추출, 북한지역의 영양상태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서 7세미만의 어린이중 62%가 장기적인 영양부족으로 인한 발육부진 상태에 있으며, 16%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음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997년 9월 30일부터 1998년 9월 15일에 걸쳐 조·중 국경지역, 중국 길림성내 장백 및 연변지역의 탈북자 1,69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불교운동본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의 가족 9,249명 중 28.7%에 해당하는 2,653명이 지난 2~3년사이에 식량난 및 경제난에 기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³⁴⁾ 또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노동당원 교육에서 “지난 고난의 행군동안 아사자가 200~250만명 정도였고 탈출자가 20만 정도였다”고 교육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지난 2~3년동안 영양실조에 의한 사망자수가 매년 50만~80만명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장엽은 96년 11

34) 사회과학원, 「정치사건」, 1973, pp 936~940.

월 중순 식량상태와 아사자 통계를 정기적으로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중앙당 조직부 책임자를 통해 95년 당원 5만명을 포함해 약 50만명이 굶어 죽었으며, 96년 11월 아사자수가 1백만명에 이른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97~98년 식량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매년 1백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귀순자 김동수(1998. 2 입국)는 평양에 다녀온 김홍립 대사로부터 북한내 아사자가 2백~3백만명에 이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94년 이후 아사자 350만명), 국군포로였던 장무환(97년 아사자 100만), 뉴욕에 본부를 둔 대외관계위원회의 35인 특별조사반(96~97년 아사자 100만) 등도 북한에서 엄청난 수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귀순자 장성숙과 김경일에 의하면 식량이 부족하면 가재도구부터 팔고 옷가지, 이불 등을 팔고난 다음 결국은 가족이 각각 흩어져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벌어먹자고 흩어진다고 한다. 식량을 구하러 집을 떠나면 병들어 죽거나 행방불명되기 일쑤이다. 부모를 잃고 집없이 떠돌아 다니는 아이들을 북한에서는 꽃제비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귀순자 김동수의 증언에 의하면 혼자라도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이혼률이 상승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생존권 위협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징후는 탈북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악화된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식량 및 생필품의 배급이 어려워지자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식량수급 현황

북한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1992년 이래 매년 약 200만 톤 이상의 만성적인 식량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더욱이 1995~96년에 걸친 두 차례 홍수와 1997년 가뭄은 북한의 식량부족현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통일부는 1997년도 북한의 총 곡물생산량을 349만 톤, 해외공급량을 121.2만 톤(수입 32.3만 톤, 원조 88.9만 톤)으로서 총공급량은 470.2만톤으로 추정하였다. 식량 수요량을 정상배급시 650만 톤, 22% 감량배급시 551만 톤으로 평가할 때(북한은 1987년이래 22% 감량배급을 실시하였는데 성인 1일 546g을 배급) 80만 톤에서 180만 톤 가량 부족하였다.

북한은 1998년 3월 2일 '조선큰물대책위원회'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하여 작년의 기상이변으로 120만톤의 강냉이와 60만톤의 쌀 생산이 감소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올연초의 식량재고량 16만 7천 톤은 3월중순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공개하였다.

농촌진흥청은 1998년도 북한의 총 곡물생산량을 전년대비 11% 증가한 388.6만 톤으로 추정했다. 이중 쌀이 146.1만 톤, 옥수수 194.7만 톤, 두류 11.3만 톤, 서류 15.4만 톤, 기타잡곡이 9천 톤이다.

1999년도 북한의 식량수요량은 정상배급시 650만 톤, 22% 감량배급시 551.3만 톤으로 평가할 때, 99년도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은 22% 감량배급시 163만 톤이 부족하다.

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최저권장량(성인 1일 458g)을 기준으로 해도 145만 톤이 모자란 양이어서 북한이 예년 수준으로 곡물 100만 톤을 외국으로 도입하거나 원조받는다 해도 60만 톤 이상이 부족해 식량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식량난은 총체적인 경제난을 반영한다. 1997년중 북한의 실질 GDP기준 성장률은 -6.8%로 '92년의 -7.7%, 93년의 -4.2%, 94년

의 -1.8%, 95년의 -4.6%, 96년의 -3.7%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90년이후 연속 8년째 감소추세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난은 외화난을 수반하여 북한은 결국 식량수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과 중국 등 외부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대북지원

국제사회는 1995년 9월이후 현재까지 7억 2,070만 달러상당의 대북 지원을 실시하여 왔으며, 1998년의 경우에도 유엔기구를 통한 통합지원(2억 1,810만 달러), 국제적십자연맹(1,148만 달러) 및 민간기구를 통한 지원(589만 달러), 개별국 직접지원(7,943만 달러)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국내민간단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한국의 지원액은 전체 대북지원액의 43%를 차지한다.

한국정부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쌀 15만톤 직접지원을 비롯,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동참하여 지난 3년 반동안('95.6~'98.11.31)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적십자연맹」(IFRC), 「유엔아동기금」(UNICEF),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총 2억 7,272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실시하였다.

1998년에는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모두 3,185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남북주민간 접촉증대 및 민간단체의 희망을 고려하여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3월 18일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질서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적십자간

지원구도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민간의 대북지원 참여(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인도인수시 민간단체 대표 참여, 대북지원 협의 및 모니터링 목적의 방북 허용) 및 모금활동의 규제완화(자선음악회 및 바자회 등 이벤트성 모금행사 허용, 언론사 및 개별기업체의 모금행사 협찬 및 무기명 기탁 허용, 협력사업방식의 대북지원 허용)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민간단체들의 경우 국제적십자연맹 및 대한적십자창구를 통하여 대북지원에 참여하였으며, 적십자사를 통한 지원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논란으로 일부단체들은 소량 식량지원을 직접 추진하여 왔다. 1995년 9월 이래 추진된 국내 민간단체의 남북적십자사를 통한 직접지원은 최근 이루어진 3차 추가지원을 포함하여 4,321만 달러(한화 472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개별단체의 직접지원보다는 대한적십자사가 지원절차(대북전통문 발송, 표기 부착 등)를 담당하고, 민간단체가 물품구매, 운송,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여 지정기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옥수수재단, 두레마을, 한민족복지재단, 한국이웃사랑회, JTS 등 국내 민간단체들은 협력사업방식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당국간의 회담을 통해 정부차원의 식량 및 농업구조 개선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간차원의 지원을 허용하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을 통한 지원에도 동참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생존권 위기의 책임

북한 당국은 식량난의 원인으로 미국의 경제제재와 자연재해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폐쇄주의체제에 의한 기술낙후, 집단적 생산방식에 의한 물질적 인센티브 결여와 중공업 우선정책의 추진 등의 정책

은 만성적인 경제침체를 가져왔다. 더욱이 에너지 자원의 부족과 그에 따른 비료·농약·장비 등의 공급 부족은 영농기반을 약화시켜 식량 증산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부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폐쇄주의 및 적대적인 대외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때 북한 식량난의 1차적인 원인은 북한당국의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개혁을 통한 개인인센티브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 대하여 권력층은 물론 김정일 자신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집단농사를 “영원히 변함없는 원칙”으로 천명하였으며 분조관리제의 부분적 개선 이외에는 개혁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주민통제의 기본 수단인 식량배급정치(북한에서는 ‘량정’이라고 함)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집단농을 해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농화가 되어 개인들의 배가 불러지면 주민통제, 즉 독재가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북한지도부는 현재의 북한 경제난을 호도하기 위하여 남한의 경제난에 대하여 외세 의존형 경제의 피치 못할 결과라고 평가하고 ‘주체형 북한경제’의 우월성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지도부는 남한의 IMF구제금융 의존 사태에 비하면 북한의 경제는 문제가 없다는 논지의 선전을 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옳은 길이었다”, “우리가 헤쳐온 자립의 길이 백번 정당하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의 목소리는 천만근의 무게를 가지고 울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폐쇄주의적 경제체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생존권의 위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다. 북한당국은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위해 현체제 고수에 집착하고 있으며 외부의 정보 유입이

수반되는 경제개혁이나 대외개방을 극구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권이라 함은 신체장애,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빈곤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사회의 영원한 목표이며, 인류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인류역사상 최대의 참화였던 1·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를 권리로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식·주, 의료 및 필수 공공사업에 있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2조와 제25조). 국제인권규약 A규약도 모든 사람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북한의 헌법과 사회보장법 등을 보면, 북한은 제도적으로는 완전한 사회보장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헌법에는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병약자·노약자·어린이 등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2조).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보면, 사회보험에는 연금제도가 있을 뿐 그 밖의 대부분은 공적 부조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연금제도는 「국가 사회보장법」(1951.8 제정)과 「사회주의 노동법」(1978.4 제정)에 따라 각각 만 60세와 만 55세까지 직장생활을 한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공적 부조는 특별대상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생활보호, 재해구호, 원호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생활보호 시책으로는 국가공로자, 인민군 군관 및 하전사의 부양가족, 제대군인, 북송교포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가 있다.

북한은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조선중앙방송』, 1997.12.5). 그러나 북한의 사회보장 시책은 제도와 실천 간에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식량배급이 평양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중단되어 있다. 노약자·병약자 등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이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앞세워 자랑하고 있는 부문은 ‘무상치료제’인데 이것도 역시 경제난에 기인한 재원부족으로 실현이 거의 안되고 있다. 북한은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헌법 제5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볼 때 북한은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그리고 예방의학적 방침 등에 관련된 보건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기초로 질병발생 사전예방이라는 의료보건정책의 목표를 위해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 주민들로 하여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의사담당구역제는 담당의사들의 진료수준 및 자질 미달과 4~5개 인민반을 책임지는 호담당의사에게 최고 4,000명까지 진료케 하는 과다 할당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의료기관으로 각도 인민위원회 소재지에 대학병원과

중앙병원 1개, 시·군 인민위원회 소재지에 1~2개의 인민병원, 리 및 노동자 구역에 리인민병원과 진료소 1개, 작은 리동을 몇 개씩 묶어 종합진료소 1개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 인민병원 이상급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북한주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민들의 수에 비해 병원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구역의 진료소 및 구역 인민병원에서 발급한 「환자의뢰서」라는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 접수시켜야 하며 이것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시·군급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진료절차 또한 매우 까다롭다.

또한 성분에 따른 의료체계의 차등 적용은 무상치료를 무색케 하고 있다. 모든 병원은 치료 대상과 급수를 정해 놓고 진료대상이 아닌 주민들의 치료는 불허하고 있다. 평양의 ‘봉화진료소’(김일성·김정일 가계와 당·정 장관급 이상), ‘어은병원’(군 장령), ‘남산진료소’(차관급 이상, 일부 인민배우·북송교포) 등 특권층을 위한 의료시설은 일반주민의 치료를 불허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은 보통 동·리 진료소나 시·군·구역 병원을 이용한다.

병원들의 치료시설과 의약품 수준은 극히 열악하다. 북한에서 소아과 의사를 지낸 귀순자 이영심(1998.6 입국)의 증언³⁵⁾에 의하면 의료기구가 없어 병원이 기능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단천시병원의 경우, 주사기 200개, 주사침 2,500개 등이 최소한 구비되어 있어야 할 장비인데, 주사바늘과 주사침이 5개 정도 뿐이며 이것마저도 주사기 피스톤이 마모되어 불량한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낡은 장비로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비는 본인부담이라고 한다. 초보적인 의료기구가 없기 때문에 의사는 진단만 내려주며 처방은 환자에게 맡기는

35)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8. 9.9.

데 환자가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오면 의사는 투약방법을 지시해주는 정도이다. 간호사 출신 귀순자 김순희(1997.5 입국)도 주민들이 항생제나 마취제와 같은 기초적인 의약품조차 구비되지 않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의약품을 직접 구입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해외에 나가는 인편이나 해외친척에게 의약품 구입을 가장 많이 부탁한다고 한다.

의료체계의 마비는 질병에 의한 사망자를 속출하게 하고 있다. 또한 경제난과 에너지난에 기인하여 깨끗한 수도물 공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수인성 전염병에 많이 희생 당하고 있다. 파라티푸스, 콜레라가 만연하고 있으며 75년까지 완전 퇴치되었다고 선전되었던 결핵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전직 의사였던 귀순자 최훈철(1998.5 입국)에 의하면 북한의 결핵환자가 300만~400만에 이른다고 한다. 감염자는 700만~800만에 이른다고 한다.³⁶⁾ 식량난에 기인한 영양실조, 수질오염, 의료체계 마비 등이 빚어낸 참상이다. 통일부는 지난 2~3년동안 북한주민의 아사자 수가 연간 50만~80만에 이른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단순 아사라기보다는 기근과 질병 등 총체적인 사회보장 체제의 붕괴가 야기한 결과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의 여성보건정책은 여성들의 건강한 보건상태를 유지시키기에는 미흡하다. 북한당국은 여성상담소와 산원을 설치하여 여성의 건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여성 및 신생아를 보호·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시설 낙후와 의약품 부족에 의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체계의 마비로 인해 출산여성에 대한 의료사업조차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5세까지 생존율도 50%에 불과할 정도로 유아사망율이 심각한 실정이다.

36)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8.9.11.

북한당국은 의약품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요법을 장려하고 있다. 즉 각종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 병원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발휘와 ‘항일유격대식 사업’ 전개를 통해 의약품을 자체 생산하는 ‘생산기지’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조선중앙방송』, 1998.10.31)하는 한편, 한방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약초재배 및 증식에 대한 ‘전군 증적 운동’의 전개를 촉구하고 각종 민간요법도 소개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서방세계로부터 수백톤의 의약품을 지원받았다. 1월말 미국 기독교교회로부터 1백여톤에 달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2월에는 이탈리아의 「협력과 발전」(CESVI)이라는 민간단체로부터 40톤의 의약품을 지원받았다. 북한은 이같은 막대한 양의 의약품을 특권층용으로 전용한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의약품 사용에 대한 내역과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귀순자 이영심의 증언에 의하면 의약품이 국제지원단체를 통해서 단천시 병원에도 일부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역 및 병원의 간부들이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프다는 핑계로 무더기로 빼내어가서 장마당에 비싼값으로 판다고 한다. 1998년 9월 30일 북한에서 무상 의료지원활동을 벌여온 「국경없는 의사회」(MSF)가 북한 철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국경없는 의사회 에릭 구마르 사무총장은 의료지원팀의 철수에 대해 “북한당국이 의료인들의 북한주민 접근을 차단하고 지원된 의약품의 배급감시를 거부하는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지원을 하려는 국경없는 의사회의 활동을 제한하여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³⁷⁾

37) 「내외통신」, 주간판 1131호 (1998.10.15).

3. 근로권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3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A규약에는 계약국은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근로권과 노동조합에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조와 제8조).

북한헌법에는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70조). 그러나 이 조항에 나타난 노동에 관한 권리는 사실상 권리보다는 노력동원의 의무에 가깝다.

헌법에는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제29조), 실업을 모른다는 것은 누구나 노동을 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율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0조). 그리고 노동의 신성한 의무(헌법 제83조),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헌법 제34조) 등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노동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전 주민의 의무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 노동법」(1978.4.18 최고인민회의 제정)에서도 헌법이 규정한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만 16세 이상의 모든 북한주민은 이와 같은 규정과 헌법 제31조에 따라 좋은 싫든 당이 정해 주는 직장에서 법이 정한 연령(남성 60세, 여성은 55세)까지 노동할 의무를 지닌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되어 있는 북한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분배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동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자유노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노동조합 형태인 「조선직업총동맹」은 단체조직권이나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갖지 못하며, 노동당만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직업동맹은 단지 노동동원을 위한 통치조직일 뿐이다. 1964년 6월 당 중앙위 제4기 9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기업관리에 대한 직업동맹의 ‘감독통제적 역할’이 폐지됨으로써 직업동맹은 당의 완전한 통제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의 직업동맹은 “조선로동당과 로동계급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당의 적극적인 방조자”일 뿐이다.

북한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노조활동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여 강력히 다스리고 있다. 형법에는 직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의 산업, 운수, 상업, 화폐유통, 신용제도를 파탄·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59조). 또한 직무를 대만하게 이행하는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징역종료후 4년간 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61조). 이러한 법규정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조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인 노동에 대한 금지조항은 없다.

한편 북한헌법 제71조와 사회주의 노동법 제62조에는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주의 노동법에는 “모든 근로자들은 연간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21일간의 보

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휴가일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직장 정치조직의 선전선동과 압력에 의해 휴가를 반납할 수밖에 없고, 김일성 부자의 생일이나 국가적 명절에만 1~2일 정도 휴식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헌법에는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라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제30조). 그러나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한다”는 규정(사회주의노동법 제33조) 때문에 8시간 휴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노동자들은 기본 일과시간 이외에도 추가 노력동원, 각종 학습 및 회의 등에 의해 혹사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북한당국이 정해 놓은 일별·월별·분기별 사업계획에 따라, 초과달성을 위해 ‘90년대속도창조운동’ 등과 같은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에 동원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간의 연장은 불가피하였다.

4. 직업선택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3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A규약에는 체약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6조).

북한헌법에는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0조). 그러나 북

한에서의 직업선택은 개인들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관의 인력수급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장배치는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소질·능력은 부차적이며,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가 직장배치를 담당한다. 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도 또는 시 행정경제위원회가 직장배치를 담당하고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중앙당 간부과의 조정을 받는 대학당국이 담당한다. 사병 출신의 제대군인은 출신지역 시·군 행정경제위원회가 담당하고 군관 출신은 시·군 당 간부과가 담당한다.

당 및 국가의 직장배치에서 선발의 기준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출신성분 또는 가족적 배경이다. 성분이 나쁜 학생들,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유일사상체계를 위반한 집안, 6.25 당시 가족이 월남하거나 북한정권에 반대하여 치안대에 가담한 집안, 지주집안 출신의 학생들은 농장·탄광 등 힘든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 간부의 자제들은 능력과 관계 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된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유린되는 가장 흔한 예는 직장배치에 있어서 '무리(집단)배치'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무리배치'란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탄광 및 각종 건설공사장 등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에 인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북한 사회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자 북한당국은 제대군인들과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을 탄광·건설현장 등에 집단배치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김정일의 '친필서한'을 보내고 '충성의 결의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일례로 북한당국은 1998년 3월말에 3만명의 고등중학교 졸

업생들을 협동농장에 집단배치하였다. 또 7월말에는 평안남도내 청년들이 북한 최대 탄광지대인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 집단적으로 배치하였다.

집단배치에 따른 불만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배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을 수 없다. 직장에 배치된 후에는 자기의 적성에 관계 없이 직장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직장을 무단 이탈하면 식량을 비롯한 모든 생필품 배급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북한당국의 직장이동 불허는 노동력의 유동으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력의 완전 장악을 통해 계획경제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직장을 통해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심리적인 복종과 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엄격한 노동법령이나 배급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직업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뇌물을 제공하여 퇴직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식료·유통 부문으로 직장을 이동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또한 직장이동을 위해 해당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고 간염 및 결핵 요양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5.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란 교육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교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장학제도의 시행 등)을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은 인격을 완전히 계발시키고 인권과 기본자유를 존중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6조). 나아가 국제인권규약 A규약에는 체결국은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자유사회에의 효율적 참여, 민족 및 인종·종족·종교 간의 이해·관용 및 친선의 증진,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3조).

북한헌법에는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3조). 북한의 교육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해 왔으나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는 변함 없이 지속되어 왔다. 북한헌법에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는 교육목표가 명시되어 있다(제43조). 북한당국은 이같은 교육목표 아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사상적 요새' 점령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1975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11년 무료의무교육제'나 1977년에 제정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9.5)는 공산주의적 인간교육을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북한의 전반적인 교육체제는 주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그 집행과정을 지도·감독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과학교육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다. 행정적 집행기관인 내각의 교육성은 당이 결정한 교육정책의 집행과 기타 교육행정을 담당한다. 교육성 산하의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각급 학교의 교육업무를 지휘·감독한다.

기본학제는 유치원 2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중등반 4년,

고등반 2년), 대학 4~6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연구원 3년 및 박사원 2년이 있다. 이 밖에 특권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기관의 특별학제와 성인교육과 기술교육을 위한 특별학제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학제와 달리 학제상 구분이 없는 '혁명학원'(만경대·강반석·해주혁명유자녀학원 등)과 예능·체육학원과 같은 특수학교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정치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경제난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열악한 수준이다. 첫째, 각급 학교의 학생선발은 경쟁을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상성분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 성분이 좋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 상급학교로의 진학희망자가 대학입학을 위한 국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해도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성분이 좋고 권세가 있는 학생에게 자연스럽게 밀려나기 때문이다. 간혹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대학시험을 치루더라도 대학에서 면밀히 재실시되는 성분조사에 걸려 주요 대학으로의 입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 주요 대학은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은 4촌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 이후 대학생 모집 과정에서 성분조사는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간부와 부유층 자녀들 뿐이다. 성분이 좋고 간부가 많은 평양에 대학입학 예정인원이 가장 많이 배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외화를 많이 보유한 계층의 자녀들은 뇌물을 주고 주요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는 등 미세하나마 변화가 일고 있다.

둘째,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지식 및 인격

함양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으며 정치이데올로기 주입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은 정치사상교육 위주로 편성된다. 인민학교 4년 동안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어린시절」 등을, 고등중학교 6년 동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력사」, 「현행 당 정책」 등의 과목을 배우고, 이 외에도 방학기간에는 김일성·김정일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 답사, 각종 야영훈련 등을 해야 한다.

이처럼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과과정은 김일성·김정일의 위상화 및 공산주의 사상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중학교부터 주체사상을 교육시키고, 특히 고등반부터는 청년동맹(옛 사로청) 조직에 가입시켜 주체사상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셋째, 북한 교육의 질은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종이 부족 때문에 교과서와 공책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평양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학교에서는 인민학교(초등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경우 90년대 들어서 새교과서가 전혀 보급되지 않아 상급학생들로부터 낡은 교과서를 회수, 학급당 각 과목별로 6~7권을 교실에 비치하고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는 5~6명을 1개 '학습반'으로 구성한 후 학습반별로 1개의 교과서를 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책이 보급되지 않아 학생들은 노트 필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농촌에서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협동농장에서 총 2달반동안 의무적으로 노력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경제난에 기인하여 학생들의 학교출석률이 매우 낮다. 대학생들의 출석률 저조에 대해 북한은 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1998.10.1)를 통해 “대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는 문제는 청년동맹과 학교 교무행정 이 긴밀한 협동속에서 강하게 내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며 우려를 표하고, “학교 청년동맹 조직에서 교무행정 사업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학생들의 출석률이 낮아도 자기 책임으로 느끼지 않고 있다”며 학교를 질책하고 있다. 대학생의 결석의 원인은 식량구입을 위해 장사에 나서고 있는데 기인하며 자퇴율이 30%에 이르는 학교도 많다고 한다.

유치원 원아들의 출석률은 60%이하이며,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들의 출석률은 40%선에 머물고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학생의 출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부모들이 식량구입을 위해 집을 장기간 비움에 따라 집을 지키거나 부모와 함께 식량구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사정으로 가뜩이나 늘 허기져 있는 학생들은 공부할 여건까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자 공부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³⁸⁾ 북한당국의 무상교육과 11년제 의무교육이라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비하면 북한 학생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38) 「내외통신」, 주간판 1135호 (1998.1.12).

V.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 정치범수용소내 인권침해 상황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정치범수용소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이 정치사상범을 수용하기 위해 많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을 탈출한 체험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AI 등 권위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가정치보위부 정보원으로 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귀순자 김용준(1982.1 입국)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정보는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하여 탈출한 강철환·안혁(1992.8 입국), 「회령수용소」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탈출한 안명철(1994.10 입국), 1980년대 중반 국가안전보위부 경비대원이었던 최동철(1995.12 입국) 등에 의해 추가로 제공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이를 ‘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 ‘이주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중파굴’ 등으로 불러 왔다.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를 ‘정치범수용소’나 ‘형무소’라고 부르지 않고, ‘OO호 관리소’라고 부르고 있다. 체제유지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죄목의 규정문서번호나 지역고유번호를 붙인 것이다. 예컨대 ‘요덕정치범수용소’는 ‘15호 관리소’로 불린다. 또한 기록상으로는 조선인민경비대 예하부대처럼 위장해 놓고 있다. 예컨대 각 정치범수용소는 ‘조선인민경비대 OOOO부대’로 위장되어 있다.

미 국무부가 한국전쟁 당시 노획한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집단수용소를 해방 이후 194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해방 직후

에는 악질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이 수용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로 치안대 가담자가 수용되었다.

이같은 수용소가 오늘날과 같은 정치범 유배소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최창익·윤공흠 등의 반김일성 음모) 이후이다. 황장엽은 '통제구역'이 1958년 '8월 종파사건'에서 유래하였으며, 처음에는 종파분자만을 이 곳에 보내다가 나중에는 반김일성분자 등 정치범을 수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은 "종파분자들은 머리꼭대기까지 잘못되어 있어 가족들과 함께 산간벽지로 보내 격리시켜 살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1958년 말 평남 북창군 소재 득장탄광지역에 통제구역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북한당국은 연안파 등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처형을 면한 종파사건 연루자 및 그 가족들을 산간벽지에 집단수용시켜 특별관리함으로써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함과 동시에 반김일성 분자들의 세력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후 북한은 1966년부터 1년간 주민재등록사업을 통하여 100만 노동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전 주민을 3계층 51부류로 나누는 과정에서 적대계층의 일부를 수용소에 수감시켰다. 당시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사람 중 종파분자 및 반혁명분자 약 6,000명은 인민재판에 의해 처형되었고, 처형에서 제외된 1만 5,000여 세대 종파 연계자 및 가족 7만여 명은 내각결정 제149호에 의거하여 산간벽지에 설치된 149호 대상지역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은 이들과 특별히 분리되어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범의 친척들은 산간 벽지나 농촌지역으로 쫓겨나 거주를 제한받게 되었다. 귀순자 주영희(1997.5 입국)는

일명 ‘김창봉사건’ 연루자 가족 7~8세대가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로 소개되어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전 민족보위상 대장 김창봉은 1969년 2월 인민군 당 제4기 4차전원회의에서 숙청되었다.

초창기에는 수용소 면적이 한국의 면 단위에 해당하는 1개 리 정도에 그쳤으나, 1973년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3대혁명소조 활동이 시작되면서 수용소와 수용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80년 노동당 6차대회를 통해 김정일이 당권을 장악한 이후 세습체제를 반대한 당·군·정 간부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최소한 4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1982년에는 8개 정치범수용소에 약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회와 격리된 채 종신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이후 1980년대 말 동구의 붕괴로 자유와 개혁의 바람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더욱 늘어났으며, 수용인원도 약 2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같은 수용소는 구 소련의 시베리아 유형장을 능가하는 가혹한 인권유린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상 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치사상범의 대상 및 처벌

북한은 정치사상범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하여 정치적으로 숙청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 죄목을 붙여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나 불건전한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를 되살리려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강한 독재를 실시합니다”고 언급함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체제에 도전하는 모든 정적들이나 사회주의 건설에 비협조적인 자들을 정치사상범으로 몰아 처형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현행 북한형법상 정치범을 처벌하기 위한 죄명으로는 ‘국가전복음모죄’, ‘반동선동선전죄’, ‘조국반역죄’ 등이 있다. 국가전복음모죄는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로 반당·반김일성 분자들이 이 죄목에 해당되어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유배되고 있다(형법 제44조).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이 자신의 비판자나 정적제거시 동 조항을 적용하여 처형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수감한 인원은 1만 5,000여 명이 넘는다.

반동선동선전죄는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 밖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를 징계하기 위한 범으로서, 이는 주로 해외정보유입을 차단하고 내부동요를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형법 제46조). 초기에는 북송교포 및 월북자와 남북역류자들 중 불평분자들을 처벌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동구 및 구소련 붕괴 이후 내부 단속을 위하여 해외유학생 및 해외근무자나 출장자 중 해외실정을 주위에 유포한 자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적용되고 있다.

조국반역죄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일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형법 제47조), 최근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국외 탈주자가 늘게 됨에 따라 동 조항에 의해 처형되거나 혹은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수용되는 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북한은 정치사상범을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 제44

조로부터 55조까지 12개 조항에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심의와 재판절차를 밟아서 교화소에 보내고 있으나, 정치사상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에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현황 및 운영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및 자강도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정치범수용소의 전체 규모와 정치범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함경북도 회령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귀순한 안명철³⁹⁾은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산하에만 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었으나, 중국 국경에 인접하여 위치가 탄로난 함북 은성군 2개소와 평양에 인접하여 비밀탄로의 우려가 있었던 5개소는 폐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평남 개천의 「14호 관리소」,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 함북 화성의 「16호 관리소」, 함북 회령의 「22호 관리소」,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 등 5개 소로 통폐합되었고, 전체 수용인원 약 20만 명도 이 곳으로 재배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수용시설이 폐쇄되고 수감자들이 다른 수용시설에 분산 배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귀순자 강철환과 이순

39)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996.7.9.

옥은 98년 2월 2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에서 현재 약 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미 국무부도 1998년 1월 30일 발표한 『'97 각국 인권보고서』에서 정치범수용소에 15~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정보원(1999.1.22)은 함북회령(5만), 함북청진(1.5만), 함북화성(2만), 함남단천(1만), 함남덕성(1만), 함남요덕(5만), 자강동신(1.7만), 평북천마(1.5만), 평남개천(1.5만), 평남북창(5천) 등에 10개의 수용소를 설치하여 체제위해분자 20만 7천여명을 재판절차 없이 집단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명철은 정치범수용소들이 대부분 오지나 탄광지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승호리수용소」(1991.1 폐쇄)의 경우처럼 비밀탄로와 노출방지를 위해 지하감옥 형태로 설치된 곳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승호리수용소」와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는 정치범 본인만이 수용되는 1급 정치범수용소라고 밝혔고, 이 외에도 국가안정보위부 '3국' 내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에 대규모의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정치범에 대한 반인륜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여론이 높아지자 이창하 조선인권연구협회 서기장은 1995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AI의 조사단을 초청하여 「사리원교화소」를 방문케 하였다. 북한당국은 AI 조사단원에게 북한의 전체 죄수는 800~1,000명이며, 이들은 3개 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정치범 240명은 「형산재교화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귀순자들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 지는데, 하나는 '완전통제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화구역'이다. 완

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결국은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따라서 완전통제구역의 수용자들에게는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고 채광 및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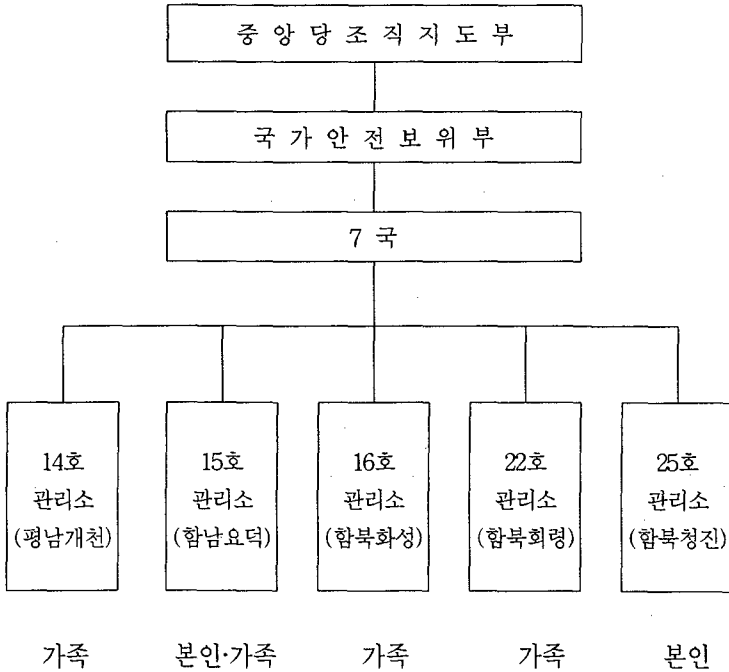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수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1년 내지 10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출소시에는 수용소 내의 생활상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는 데 이를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이들은 강제수용소에서 출소된다고 해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하층 생활을 하게 되며, 국가안전보위부의 최우선 감시대상이 되어 직업·여행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이 출소후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10년 가중된다.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중 함남 요덕의 「15호관리소」만이 유일하게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전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수용소는 15호관리소 내의 혁명화구역뿐인 셈이다.

혁명화구역에는 대체로 북한의 엘리트와 조총련 간부와 인연이 깊은 북송교포나 그 가족들이 수용된다. 북한당국은 이들을 수용소에 수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가한 뒤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체제에 순응케 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사상범들은 모두 종신수용소에 수감된다. 귀순자인 안명철과 강철환의 증언에 의

<그림 5-1> 특별독재대상구역 관리현황



하면, 종신수용소에 수감된 사람 중 극히 일부는 종신수용소에서 혁명화구역으로 이감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은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되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표 5-1> 해산된 수용소

명칭	위 치	해산일시	해 산 이 유
11호	함북 경성 관모봉아래	'89년 10월	김일성 별장건설
12호	함북 온성 창평로동지구	'87년 5월	국경인접, 비밀탄로
13호	함북 온성 종성로동지구	'90년 12월	국경인접, 비밀탄로
26호	평양 승호구역 화천동	'91년 1월	평양인접, 비밀탄로
27호	평북 천마	'90년 11월	이 유 불 명

* 귀순자 안명철의 증언에 따른 수용소 현황표임.

수용소 조직 및 규모

각 수용소 규모는 보통 50~250km² 정도이며, 각 수용소에는 약 5,000여 명에서 5만여 명까지 수용되어 있다. 수용대상의 선정 및 관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관할지도부 지도하에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7국 내의 각 수용소에는 관리소장 예하에 정치부, 보위부, 관리부, 경비부, 후방부 등이 조직되어 있다.

정치부는 보위부원, 경비부대의 사상동태 및 비리를 감시하거나 처벌하는 부서이며, 보위부는 수용자들의 사상동태를 감시하고 이들 중 악질분자들(도주, 살인, 불평분자 등)을 색출하여 처형하거나 또는 보다 강도 높은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리부는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여 각 수용소에 주어진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경비부는 수용소의 외곽경비 업무와 함께 수용소 내부에서 폭동이나 소요 발생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임무를

말고 있다. 이 외에도 보위부원과 경비부원들의 식량이나 부식을 공급하는 후방부와 수용소 내에 필요한 건설용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과, 탄광에 필요한 화약을 제공하는 화학과 그리고 재정과, 운수과, 통신과 등이 조직되어 있다. 이들 부서 중 수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는 보위부와 경비부이다.

수용소 경비 실태

각 수용소에는 외곽경비를 위하여 3~4m 높이로 이중 삼중의 철책선과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조망을 따라 1km 간격으로 약 7m 높이의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다. 감시망루에는 자동소총과 수류탄 및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경비병이 지키고 있다. 경비부의 중무장한 경비대원은 군견과 함께 수시로 외곽순찰을 하고 있으며, 경비취약지역에는 경비대원이 24시간 매복되어 있다. 따라서 탈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간혹 열악한 수용소 환경을 참지 못하고 탈출하다가 체포된 자들은 재판 없이 공개총살되거나 교수형에 처해진다. 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되는 숫자는 1개소당 매년 약 15명~20명 정도이다. 탈출하다가 체포된 자들은 반드시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되는데, 이는 다른 수용자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수용대상 및 절차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는 반혁명분자 색출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관장한다. 수용대상자는 각 지역의 담당보위부 지도원이 색출하며,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심사만으로 수용이 결정된다. 평양의 용성구역 마람지구에 있는 「마람비밀초대소」가 대표

적인 정치범 색출기관이다. 주로 반당·종파분자, 반혁명분자 등 김일성·김정일체제 위해분자를 비롯해서 과거 지주, 종교인, 친일파 및 김정일 후계체제 반대자, 해외탈출기도자와 그 가족 그리고 불순복송교포 등이 색출대상자에 포함된다. 동구 공산권국가들의 붕괴 이후에는 해외실정을 잘 아는 유학생과 해외근무자 및 출장자 중 주민에게 외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유포한 자가 색출대상에 많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수용자도 많다. 예를 들면 고려호텔 안내원이었던 ‘김명준’은 외국방문객의 짐을 운반해 준 대가로 약간의 사례비를 받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간첩혐의로 마람초대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북한당국은 ‘조국배반죄’라는 죄명을 씌워 그를 요덕수용소에 수용하고 3년간 강제노동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외에도 1995년 2월 1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94 각국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김일성 사진이 실린 신문위에 앉았다는 죄명으로 체포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도 있다.

귀순자 김광호(1987.3 입국)는 인민반의 주민통제정책으로 겪은 피해에 대해 증언하였다. 김광호 부부는 인민반 반장에게 열쇠를 맡기고 출근을 했다가 당에서 내려 온 유일사상 검열성원의 점검을 받게 되었다. 검열성원과 인민반장은 모든 가정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와 도서를 점검하였고, 김광호의 집에서 아이의 오줌에 젖어 훼손된 『로작』이라는 책을 발견하였다. 이 책의 맨 앞장에는 김일성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검열성원은 김일성 사진을 잘못 간수했다는 죄명으로 김광호 부부를 고발하였고, 결국 김광호의 가족들은 강제수용소로 추방되었다.

북한에서는 “이 세상 힘들어 못 살겠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상점

에 비누 한 장, 치약 한 개 파는 것이 없으니 이 곳이 상점이냐”라는 식의 항의 한 마디만 해도 정치범으로 몰려 수용소에 수감된다. 1992년 10월 평남 순천소재 배급소에서는 식량배급을 받지 못한 여자 한 명이 “왜정시대보다 못하다”는 고함을 지르고 주위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여 집단항의사태로 발전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사회안전성에 의해 해산되었으나, 그 여자는 당일 밤 가족과 함께 행방불명되었다.

어떤 이유로든 일단 정치사상범으로 낙인찍히게 되면 일체의 재산을 몰수당한 후 야간에 전 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이송된다. 아무런 사전통보나 재판절차 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척까지도 이들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설사 안다고 해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화를 두려워 하여 당국에 항의하거나 보다 더 상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들은 어느날 이웃이 야간에 없어지게 되면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끌려 간 것으로 추측만 할 뿐 더 이상 이들의 행방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수용자 생활실상

정치사상범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혜택 등도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친지들의 면회나 서신연락도 금지되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된다.

일상적으로 수용자들은 새벽 5시반까지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한 후 보위부원과 작업감독으로부터 인원점검을 받는다. 작업은 5명 1조 단위로 할당량이 주어지는데 저녁 9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간 정도인데 각자 지참한 강냉이 주먹

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저녁 6시경에 담당 보위부원이나 감독, 인민반장 등이 당일 할당된 작업목표를 중간 점검하고 목표에 미달된 경우 작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식량난 이전 북한의 일반노동자는 600g의 양을 기준으로 노동의 강도에 따라 쌀과 잡곡이 섞인 배급을 받았으나, 수용소에 수감된 정치범들은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이보다 적은 양의 배급을 받았다. 가족세대의 경우 성인 1인은 주식으로 1일 강냉이 550g과 부식물로는 약간의 소금과 주 1회 정도 도토리로 만든 된장을 한 숟가락 정도 배급받았다. 그러나 최근 식량난으로 인해 정치범에 대한 배급량도 수시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독신중대에 수감된 수용자에 대한 주·부식은 더욱 열악해서 1일 강냉이 360g과 소금만이 제공된다. 작업 태만시에는 90g을 더 공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돼지나 소 구유통 속에 남아 있는 사료찌꺼기를 먹기도 하며, 심한 경우 쇠뿔 속에 박혀 있는 강냉이나 콩 등을 씻어 먹기도 한다. 강철환과 안혁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들이 1년 정도 수용소생활을 하고 나면 영양실조로 인해 몸무게가 평균 15kg 이상씩 줄어든다고 한다. 안혁의 경우도 입소 전 75kg이었던 몸무게가 2년만에 38kg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독신자들은 주로 막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세대는 흙벽돌, 판자, 거적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집을 지어 살고 있다. 방바닥과 벽은 흙을 이겨 만들기 때문에 실내에는 먼지가 많다. 지붕은 판자위에 거적을 덮어 만들고, 방바닥은 피나무 껍질로 다다미를 깔아 만든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에는 보온이 제대로 안된다.

수용소 내에서는 자가발전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용

량이 미미하여 각 가정마다 전구 한 개만 달게 하고 있다. 그나마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만 전기가 공급되며, 전력은 불을 켜도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하다. 그러나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소는 상급에 속하며, 어떤 수용소는 전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식사시간에만 광솔로 불을 밝히기도 한다.

또한 연료공급도 충분치 않아 취사용 이외에 난방용 연료는 거의 공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겨울에는 온 가족이 한 데 모여 몸을 비비며 추위를 쫓느라고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으며, 추운 날에는 동사자도 발생한다. 식수도 하천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의복 공급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 가족세대에게는 수용기간 중 모포 1장과 상하 누빈 동복 1벌만이 지급된다. 작업복은 3년에 한 벌씩 지급되나 독신자들에게는 이것마저도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감당시 입고 갔던 옷을 출감될 때까지 기워가면서 입는다. 신발은 노동화가 1년 6개월에 1켤레 지급되고, 겨울신발인 스킨화는 5년에 1켤레 지급된다. 양말이나 속내의는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 겨울에는 천조각으로 얼굴·팔·다리를 감아 생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절단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수용자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노동으로 폐렴, 결핵 감염 및 펠라그라병(영양실조) 등의 질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으나 모두 예외 없이 작업장에 동원되고 있다. 작업반장이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정되는 수용자들은 중환자가 수감되는 요양소로 보내는데, 이들은 치료해 줄 의사나 약이 없기 때문에 격리 수용되어 방치된다. 이같이 방치되어 죽는 사람이 1개 수용소당 매년 약 40명~50명에 이른다.

AI는 수용소 규칙을 어긴 죄수들을 가두기 위한 형벌실이 설치되

어 있다고 밝혔는데, 이곳은 늪거나 서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곳으로 죄수들은 몇주 동안 이곳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용소내 집단학살 및 처형 현황

정치범수용소내 인권탄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집단학살이 있었다는 점이다.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1986년 10월 함북 온성의 12호관리소에서는 정치범들이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용소내 보위원 가족마을을 습격하여 보위원 가족 수백 명을 살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국가안전보위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경비대 1개 대대병력을 출동시켜 봉기가담자를 포함하여 청장년 약 5,000여 명 이상을 사살하였다.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고통 등을 이기지 못하고 탈출하다가 체포된 자, 보위부원에게 반항하거나 보위부원을 구타한 자는 반드시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에 처하거나 총살한다. 강철환·안혁·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이같은 처형과 작업 중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원은 1개소당 매년 수백 명에 달한다. 강철환의 증언에 의하면, 폐쇄된 승호리수용소에서는 1개월에 3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공개처형 대상자가 발생하면 통상 1~2일 감금해 두었다가 처형 당일 아침 10시경 작업장에 있는 수용자들을 전원 집합시킨 뒤 처형하고 시체는 인근 야산에 매장한다. 안명철은 공개처형이 공포심을 조장하여 수용자들을 순종케 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처형이 너무 잦아 정치범들이 ‘면역’이 생긴 데다 정치범들의 반발심과 분노만을 유발함에 따라 1984년부터는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을 많이 실시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귀순자 안명철은 국가안전보위부 3국 관할의 정치범수용소에 서는 비밀처형과 함께 수용소 의사들에 의해 일본의 731부대나 나치 수용소에서 자행되었던 것과 유사한 생체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같은 증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북송교포 정치범수용소 수용실태

AI의 보고서와 정치범수용소에 함께 수용되었던 귀순자의 증언 이외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북송교포의 현황과 실태를 알리는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최근 일본내 북송교포 가족과 인권단체 등의 노력으로 북송교포들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철환·안혁의 증언에 의하면, 요덕수용소에 많은 북송교포가 수용되어 있었다. 이 곳에는 1974년 초 약 100여 세대 600여 명이 처음 수용된 이후 수용자가 매년 약 100~200세대씩 증가되어 1987년에는 요덕군 '구읍 및 입석지구'의 북송교포 마을에만 일가족 약 800여 세대 5,000여 명과 범죄자 300여 명 등 5,30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한편 강철환·안혁의 증언에 의하면, 가족 중 과거 일본 조총련 간부나 상공인 등은 가족과 분리되어 다른 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이 수감중 만났던 많은 수용자 중 실종자가 많은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강철환은 1977년 실종된 할아버지 '강태휴'(전 조총련 교토본부 상공회장)의 행방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북송교포들은 대개 간첩혐의나 일본 및 남한 상황 등 외부사정을 북한주민들에게 유포하여 내부교란을 획책했다는 죄명으로 잡혀 온다. 그러나 대부분 본인들은 자신의 죄명을 모르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는 보위부원들은 이들을 '반쪽발이'라고 냉대하고 북한주민 출신 수용자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한다. 북

송교포들은 북한주민 출신보다 열악한 수용소 환경에 더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

2. 납북억류자 실태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740명이고, 이 중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총 442명(<부록> 참조)이다.

북한은 휴전 이후 1955년 5월 28일 「대성호」와 어부 10명을 강제 납치한 이후 총 3,662명의 어부를 납북하였다가 3,255명을 돌려 보내고 현재까지 407명의 어부를 억류하고 있다. 가깝게는 1995년 5월 30일 「제86우성호」의 어부 8명(납북 도중 3명 사망)을 강제 납북하였다가 1995년 12월 26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1970년 6월 5일 납치한 해군 I-2정 승무원 20명 전원을 선박과 함께 억류하고 있으며,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여객기와 함께 납치한 승무원과 승객 중 12명을 억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79년 4월 노르웨이에서 납치한 한국인 교사 고상문과 1995년 7월 중국 연길에서 납치한 순복음교회 목사 안승운을 강제 억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직 신원사항과 납치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납북억류자가 북한에 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I가 1994년 7월 30일 밝힌 49명의 정치범 명단 속에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북한은 AI의 발표가 주목을 받자 명단 속에 포함된 고상문(1994.8.10)과 유성근(1994.8.11)을 북한방송에 내보내 기자회견 형식으로 ‘자진월북’을 밝히게 하였다. 또한 귀순자 안명진(1993 입국)은

납파간첩에 의해 납치된 한국사람들이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납북억류자들 중 일부는 대남방송이나 간첩교육에 이용되고 있다. KAL기 스텐디스였던 성경희·정경숙 등은 대남방송에 이용되어 왔다. 또한 납북억류자들은 납파간첩을 훈련시키는 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안명진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억류자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0여 명이 평양 용성구역 소재 '이남화 혁명관'에 배치되어 납파간첩을 교육시키는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남화 혁명관'은 납파간첩 양성기관인 중앙당 3호청사내 작전부가 관할하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1992년 개칭)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실상과 한국에서의 생활 방법 등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축소된 한국모형관이다.

그러나 이용가치가 없는 나머지 납북억류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I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납북억류자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사실이 확인된다. 동 위원회가 1994년에 발표한 「북한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특별보고서에는 1990년 당시까지 「승호리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은 이재환 등 납북·월북자 22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1996년 9월 24일 적십자사 성명을 통해 1995년 7월에 납북된 안승운 목사가 강요에 의해 납치된 것이 아니라 '의거입북'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6년 9월 13일 중국정부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안 목사 납치범 중 1명인 이경춘에 대해 '불법 감금 및 불법 출경죄'로 징역 2년과 강제추방형을 판결하였다. 즉 중국정부는 안 목사 사건이 북한측에 의한 납치사건이었음을 공식 확인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 사건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북한측에 안 목사의 즉각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

한측은 아직도 안 목사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상황

북한이탈주민 현황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2조 2항). 199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상,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규모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2,000~3,000명 수준으로, 이 중 현재까지 우리 재외공관에 직·간접으로 국내입국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약 5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10만~2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러시아내 별목장 및 건설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으로의 탈출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동이 용이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은 북한으로 귀환하고, 상당수는 재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식량난으로 부모를 잃거나 가족해체로 인해 북한내에서 상당기간 유랑생활(‘꽃제비’)을 해 온 어린이들과 여성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지국 공안이나 북한 안전원에게 발각될 경우 북한과 현지국간에 체결된 밀입국자 송환협정에 따라 강제송환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별다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북한주민의 가장 유력한 탈출지인 중국·러시아 정부는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여 상호인도협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당국에 송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헌법상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고 있으나, 현지국과의 정치적·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지국 공안과 북한 안전원들을 피해 은신하면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고 있으며,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으로의 입국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탈출이 증가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면서 북한당국은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1995년 국경지대를 '전선지대'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10군단'을 창설하는 등 국경경비를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은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체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과 현지 공관원 등 3~4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편성하거나 '국가안전보위부 그루빠'를 현지에 파견하여 북한이탈주민 색출·체포활동을 전개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들의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회유성 조치도 취하고 있다. 회유성 조치로서 대표적인 것은 귀환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미처벌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선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이같은 선전을 이들을 색출하기 위한 조치로만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통제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체류자를 소환·재교육시키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북한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장승일 전 이집트대사 등 엘리트계층의 탈출이 잇따르자 해외파견자들과 그 가족들을 긴급 소환하여 재교육시키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89년 10월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전 해외공관에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 연구원, 유학생을 소환할데 대하여”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북한은 송환된 북한이탈주민들을 초기에는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수용소에 특별관리하고, 가족들을 통제구역으로 강제이주 조치하였다. 그러나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자 탈북후 체류기간과 탈북동기에 따라 처벌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1997년 9.27이후 특정경우(보위부 및 사회안전원 집결소에서 관리)를 제외하고는 ‘9.27 구호소’(꽃재비 수용소)에서 일정기간 수용후 석방하는 등 처벌을 완화하였다. 1998년 2.13 조치이후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이탈한 주민들을 출신지역별로 분류하여 국경지역 주민들은 가볍게 처벌하고, 황해도 등 내륙지방주민들은 조국을 배신한 자로 규정 정치범으로 처벌하나 가족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헌법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배반죄(구헌법 제 86조)를 삭제하는 등 급증하는 탈북사태에 대응하여 처벌을 완화함에 따라 제3국내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난민지위 획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은 귀환시 정치적 처벌이 명백한 경우와 정치적 처벌보다는 단순처벌후 석방될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개인적인 처벌의 위험을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즉 개인의 출신지역, 출신성분, 연령, 탈북의 기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귀환의사를 무시한 강제송환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1998년 말 현재까지 국내입국한 귀순자는 총 945명이고, 사망자나 해외이민자를 제외하면 741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귀순자들의 국내입국은 199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70명을 기록하였다.

귀순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탈북 동기나 규모, 유형, 연령과 직업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입국한 귀순자들만을 대상으로 탈북동기를 살펴볼 때 이전에는 성분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는 가운데 막다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탈북한 경우가 많았다면, 전 가족의 해상탈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식량난으로 인한 곤궁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

탈북규모를 보면 지난 해부터 급증한 가족단위가 지속되었다. 김정호(1996.12 입국), 김원형·안선국(1997.5 입국) 두 가족 14명 등의 대규모 탈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김동수(1998.2 입국)·지만철

(1998.5 입국) 가족 등 3~4명 단위의 가족 탈출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연령층도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탈북유형도 비무장지대나 제3국을 경유한 방법 외에 선박을 타고 해상을 경유하는 방법이 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상감시망을 뚫고 탈출하는 것은 비무장지대를 통해 탈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상을 통한 탈출은 감시망의 허술보다는 필사의 탈북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귀순자들의 직업도 아주 다양해졌다. 황장엽과 같은 고위 간부, 외교관, 의사, 외화벌이지도원, 군인, 학생, 교원, 농민, 노동자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하고 있다. 1997년 12월 국군포로 양순용의 입국이후 1998년에도 장무환(9.30), 김복기·박동일(12.14)과 가족이 중국으로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되었다.

북한이탈 배경

북한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탈북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계속된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1995~97년 수해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의 가중은 주민들의 탈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의 중앙배급체계가 기능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은 식량 및 생필품 배급과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의 식량난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어 왔고 유엔 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어 왔으나, 북한내 운송수단의 미비 및 분배의 투명성 부재로 인해 북동부 지역 등 일부지역에서는 아사자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과 전반적인 경제난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구호나 경제원조와 같은 응급처방으로 단기내 회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아와 궁핍을 모면하기 위한 북한주민의 탈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난·식량난의 악화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은 탈북을 촉진시키고 있다. 조선족 보따리 장수와 해외교포들의 북한 방문, 해외유학생 및 해외과견자들의 북한 귀환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외부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탈북하였다가 귀환한 주민들의 경험도 주요한 탈북촉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북한주민들은 중국 및 한국의 발전

상을 알고 있으며, 한국방송을 비밀리에 청취하는 주민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발전상은 북한주민들에게 체제비교의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외부정보의 유입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는 탈북에 대한 욕구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셋째, 북한내 사회기강 해이와 사회일탈현상의 증가는 탈북현상을 촉진시키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돈이면 최고”라는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이 북한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사적인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뇌물수수, 경제범죄 등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 경제활동이 발각될 위험에 처한 경우 탈북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일탈현상과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는 이미 물리적 통제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탈북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해외체류자 및 근로자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탈출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1996년초 현성일 부부, 차성근 귀순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난으로 인한 해외공관의 자금난과 공관원들의 궁핍한 생활, 마약 등의 밀수·밀매 및 위조미화의 제작·유통, 공관내 조직원들의 갈등 증폭 및 상호감시·밀고, 강제송환 등은 공관원들의 탈북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외화벌이사업중 한국 상사원이나 선교사들과 접촉한 경우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해외체류자 중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소환 및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중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파견된 해외근무자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물리력만으로는 통제하기 힘들다.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은 동북 3성(요녕·길림·흑룡강성) 조선족사회를 근거로 잡역이나 영농지원을 하면서 은신하고 있고, 소수는 동남아 등 인접국가로의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국경지역에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난이후 친인척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탈북이 증가하면서 무연고자의 탈출도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탈북을 지원하는 경우 '국경관리방해죄'(1997년 10월 개정형법)로 처벌을 강화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은신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분상 불안정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중국내 합법적 거주를 위한 호구(공민증) 및 체류증을 구입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등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로 한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은 조교(북한국적의 중국거류민)에 의한 밀고 및 특무(북한의 정보원 내지 기관원)와 중국 공안당국의 색출활동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체포될 경우 북한과 중국이 1960년대 초 비밀리에 체결한 「중국·북한 탈주자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강제송환된다. 『동아일보』(1996.12.26)가 입수한 「<길림성 변경관리조례>선전제강(提綱)」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1993년 11월 「길림성 변경관리조례」가 통과된 이후 1994~95년 동안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140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98년 12월 16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탈북자 150명이 중국 吉林省 通化市 공안당국에 검거되어

북한으로 보내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길림성 공안당국은 12월 16일 당일인제한 20명의 탈북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1백여명을 적발해 돌려보냈으나, “그들은 배가 고파서 왔으며 정치적인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1997년 귀순한 김재원과 최영주는 중국내 은신 중 동반한 차남 김은철이 행방불명되어 국내입국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김은철의 행방확인을 요청하였고, 중국 홍십자사는 “김은철이 1997년말 단둥부근의 국경에서 북한의 안전기관에 인계되었다”고 통보하여 왔다.

국제사회는 1951년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난민들의 추방이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난민협약」 제33조).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박해위험으로 인해 탈출한 중국내 북한 주민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난민규정은 난민이 그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거나, 특히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국가에 위협한 존재가 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난민협약」 33조 제2항).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헌법 제 32조 2항)하고 있는 바, 북한이탈주민들은 송환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난민협약」의 당사자로서 국제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관계국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급증하면서 일본 오사카에 본부를 둔 북한민주화 단체인 「구원하라! 북조선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는 재중 탈북고아 돕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탈북 어린이들이 2만명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내 북한어린이들은 가족해체로 인해 단신 탈북하거나, 부모동반 탈북후 부모가 병사 혹은 강제송환되어 홀로 남게 된 경우로 구결과 절도로 연명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의 경우 강제송환시 9.27수용소에 7~15일정도 수감후 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정경우에는 시범적으로 가혹한 처벌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가 초기에는 농촌 총각들과의 결혼을 주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갈수록 유흥업소(매춘), 조직폭력배 연루 등 강제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중국은 97년 10월부터 국경관리방해죄로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을 처벌하고 있으며, 국내언론에 인신매매가 보도되면서 중국 및 북한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왔다. 1998년 6월 안도현지역에서 부녀회장이 중국주민과 결혼한 탈북여성들에게 호구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강제로 송환하기도 하였으며, 두만강유역에서 여성도강자가 인신매매와 관련된다하여 현장총살된 경우도 발생하였다. 1998년 10월 28일 중국신문(服務導報와 延邊日報)이 최초로 山東省 원청현에서 발생한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3,900~4,700위엔, 한화 약60만~80만원에 거래) 및 강제송환 사건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중국당국은 탈북자들의 절도, 인신매매, 밀수 및 살인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회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여 탈북자들을 송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강제송환이후 정치적 처벌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개별적인 정치적 박해의 위험은 줄었으나 북한내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밀입국자 송환

의 경우로 처리하여서는 곤란하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내 극도의 식량난을 피해 탈출한 경우로 정치적 난민(mandate refugee)의 지위를 부여받기는 어려우나, 국제사회의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향유민(displaced persons)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은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에 따르면, 불법 이주자(undocumented migrant)라 할지라도 생명권, 노예 및 강제노동금지,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금지, 사생활 보호권, 이동의 자유, 사상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시정되어야 한다.

러시아내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러시아내 북한이탈주민은 200~3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러시아내 벌목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 탈출한 북한주민들로서 블라디보스톡,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러시아 국경지역을 전전하며 의류 등 보따리 장사를 하거나 일용직 노동자(청부업)로 일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이나 한국인 등의 도움을 받아 은신하고 있다. 러시아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통한 난민지위 획득 등 제도적으로 국내입국의 길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들이 난민조약상의 권리를 보호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노동자들이 구 소련지역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당시 구소련의 당 서기장였던 브레즈네프와 북한의 김일성이 체결한 「벌

목협정」에 기초해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지역에 벌목장이 설치된 이후부터이다. 한때 2만여 명에 달했던 북한 벌목공의 수는 현재 1,500~4,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북한과 러시아는 1997년 9월 벌목 합작사업 축소 조정을 위한 협정서를 채택하였다.

벌목장을 제외하고도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근교의 광산, 건설현장 등에 많은 북한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있다. 광산현장에서 건축노동자로 일했던 귀순자 윤성철(1996.3 입국)은 1990년 당시 자신이 속했던 현장만 해도 11개 기업소에 2,000여 명의 북한노동자가 파견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1996년 「국제사면위원회(AI)」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인용하여 노보르비르스크 근교의 광산에서 3,000여 명의 북한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의 작업현장 이탈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구 소련 붕괴 이후인 1990년대 전후부터이다. 1990년 전후 목재생산량이 감소하고 노동력이 축소됨에 따라 북한 임업대표부가 잉여노동력을 작업장 밖으로 파견하여 소위 ‘외화벌이’나 ‘부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북한노동자들의 작업장 이탈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작업장을 이탈한 북한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안전원의 지속적인 추적을 받고 있으며, 체포되어 송환되면 사형도 감수해야 한다. 과거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구 소련경찰에 의해 체포되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비밀의정서」에 의거하여 북한당국으로 인계되었다. 이 비밀의정서는 1993년 러시아 최고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세르게이 코발료프에 의해 불법으로 선언되었다.

하지만 이같은 선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에서 북한 안전원의 북한이탈주민 추적활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임업협정(1995.2 체결) 제14조 5항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 조항에는

북한노동자들의 모든 사적인 또는 외화벌이사업은 러시아 지방당국의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이나 러시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하거나 작업장을 이탈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

1995년 UNHCR은 시베리아별목장을 탈출한 별목공에 대해 최초로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한국으로의 망명을 허용하였다. 유엔기구가 국제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탈출별목공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간 북한이 강력히 제기해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범법자라는 주장과 한국으로의 망명이 한국정부에 의한 납치라는 주장은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1993년 2월에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지만 러시아 지방당국은 북한이탈주민문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지방당국은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을 송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원활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난민협약」상의 권리를 보호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AI는 대부분 러시아경찰들이 UNHCR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한 신분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당국의 추적을 피해 다니면서도 러시아당국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AI에 따르면, 러시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법에 보장된 자신들의 권리들에 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지역인권단체가 거의 없으며, 아무도 북한이탈주민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작업장을 탈출할 때 러시아경찰의 송환조치를 우려해 신분증(거주허가증)을 폐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의 부재는 오히려 송환의 근거가

되고 있다. AI는 1993년 러시아여성과의 혼인을 신고하려 했던 ‘최경호’라는 북한이탈주민이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송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체포되면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안전원에 인계된다. 귀순자 윤성철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안전원은 임의대로 작성한 서류(대부분 한국으로의 탈출기도, 한국방송 청취 등의 죄명 기재)에 강제로 날인시킨 후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고 있다. 강제송환은 파견된 국가안전보위부원이나 안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서류는 출신지역 도 정치부로 이송된다. 북한으로 이송할 때에는 탈출하지 못하도록 다리에 깁스를 하거나 족쇄를 채운다.

송환되는 과정에서 반항하게 되면 즉결 처형된다. 1996년 5월 말 한국으로 망명하려다 러시아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당국에 넘겨졌던 북한이탈주민 1명이 송환현장에서 즉결 처형되었다. 또한 AI는 ‘송창근’, ‘김선호’ 등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송환되어 처형되거나 송환도중 자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AI는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가 송환되지 않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뒤 몰도바 소재 외국인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AI는 북한당국에 송환자 처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한편, 9월에는 러시아 내의 북한이탈주민 인권현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발표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였다.

빈 면

부 록

빈 면

<부록 I> 남북억류자 명단

1. 남북 및 남북억류자 현황

구분	계	어부	KAL	I-2정	기타
남북	3,740	3662	51	20	7
억류	442	407	12	20	3

* 상기 통계는 제3국을 통한 미확인 남북억류자는 미포함

** 상기 통계는 사망자도 포함

2. 연도별 남북억류자 현황

연도	억류자수	누계	연도	억류자수	누계
1955	10	10	1972	66	390
1957	2	12	1973	6	396
1958	23	35	1974	28	424
1964	16	51	1975	(1)	425
1965	22	73	1977	(1)	426
1966	2	75	1979	1	427
1967	43	118	1980	(1)	428
1968	131	249	1987	13	441
1969	21	270	1995	1	442
1970	38	308			
1971	16	324			

* () 수치는 미확인 사항임

3. 해상납북의류자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1	대성호	'55.5.28	김순귀	47	경기 용진
2	"	"	김장현	44	"
3	"	"	박표만	41	황해 해주
4	"	"	유외택	42	"
5	"	"	유장화	49	경기 용진
6	"	"	윤성우	41	황해 해주
7	"	"	이산음	41	"
8	"	"	정태현	41	"
9	"	"	조종일	40	"
10	"	"	황득식	42	경기 용진
11	해룡호	'57.11.9	마승섭	44	강원 고성
12	덕길호	'57.11.9	김성주	48	경남 통영
13	명규호	'58.4.28	박동근	33	전북 남원
14	"	"	홍복동	20	경기 용진
15	평화호	'58.4.29	김영복	20	경기 부천
16	"	"	박영근	32	강원 고성
17	다복호	'58.4.30	김명선	47	경기 연백
18	"	"	김창현	32	평북 철산
19	풍영호	'58.4.30	한진용	24	경기 부천
20	신흥호	'58.4.30	박세운	19	경기 강화
21	신복2호	'58.5.14	장순종	18	경남 삼천포
22	신명호	58.11.7	송상인	49	함남
23	"	"	송성락	52	강원 고성
24	"	"	신광필	37	함남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26	금구호	'58.11.7	이용택	46	함남
27	"	"	허 준	45	"
28	어성호	'58.12.6	김범주	18	강원 고성
29	"	"	김여훈	18	"
30	하영호	'58.12.6	김명은	46	경북 울릉
31	"	"	김윤택	34	강원 고성
32	"	"	엄광섭	46	경북 울릉
33	금능호	'58.12.6	김개락	28	함남
34	"	"	윤승범	42	강원 홍천
35	광영호	'58.12.6	김원로	53	강원 고성
36	보승2호	'64.3.1	곽중효	36	"
37	"	"	곽형주	32	"
38	"	"	권오동	34	"
39	"	"	박태길	31	"
40	"	"	송은석	48	미상
41	"	"	이종윤	34	강원 고성
42	"	"	임귀복	47	"
43	"	"	최동길	17	"
44	"	"	최문길	23	"
45	"	"	최석용	43	"
46	"	"	최준수	39	"
47	강화호	'64.7.19	박기정	26	경기 강화
48	"	"	한상준	28	"
49	부영호	'64.7.29	문성천	38	황해 장연
50	신성2호	'64.10.16	김광호	22	경남 밀양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52	광명호	'65.5.8	최동기	41	경북
53	대영호	'65.5.31	이정웅	22	경기 용진
54	승리호	'65.10.29	나용열	28	인천 동구
55	"	"	현근화	33	강원
56	용복호	'65.10.29	김분임	61	경기 강화
57	"	"	문정숙	25	"
58	용미호	'65.10.29	정영남	38	"
59	춘곡호	'65.11.15	정창규	35	경남 통영
60	"	"	천태옥	34	경북 영덕
61	명덕호	'65.11.20	김경수	18	강원 명주
62	"	"	김성만	32	강원 양양
63	"	"	김장원	16	강원 속초
64	"	"	김정구	19	경북 영덕
65	"	"	이병기	16	강원 고성
66	"	"	이창영	18	강원 명주
67	"	"	주인복	46	강원 고성
68	"	"	최영중	17	"
69	"	"	한동순	26	경북 영덕
70	덕삼호	'65.11.20	서봉래	43	강원 고성
71	대양79호	'65.11.26	김태운	50	미상
72	행영호	'65.11.30	김종옥	28	강원 양양
73	"	"	서석민	18	경남 거제
74	영농호	'66.1.26	황창섭	54	미상
75	대성호	'66.6.24	박팔만	17	전남 해남
76	천대11호	'67.4.12	김대곤	27	경북 경주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78	천대11호	'67.4.12	김영일	23	경남 삼천포
79	"	"	김장훈	31	경북 경주
80	"	"	김홍일	25	경남 산청
81	"	"	남복이	36	경북 영덕
82	"	"	이정식	34	미상
83	"	"	장길용	27	"
84	"	"	장영식	33	"
85	"	"	정학명	37	"
86	"	"	진정팔	26	경북 영일
87	"	"	최명환	34	전남 완도
88	"	"	최종등	25	경남 거제
89	"	"	최효길	29	미상
90	창성호	'67.5.23	윤경구	18	충남 서산
91	"	"	홍승균	16	충남 태안
92	승용호	'67.5.28	이선일	17	전북 옥구
93	태영호	'67.5.29	김옥준	25	충남 서산
94	"	"	최창의	19	충남 태안
95	풍복호	'67.6.5	문경식	16	전북 군산
96	"	"	최원모	57	"
97	부성3호	'67.6.15	김봉수	27	서울 용산
98	정진호	'67.7.22	이기출	18	경북 칠곡
99	어성호	'67.11.3	오원섭	41	강원 고성
100	거성호	'67.11.3	이진영	25	"
101	금윤호	'67.11.3	김자준	37	"
102	"	"	박규채	36	경남 남해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104	금윤호	'67.11.3	이창식	29	강원 고성
105	"	"	이태수	32	강원 명주
106	"	"	장재천	26	강원 고성
107	해양호	'67.11.3	김상준	23	강원 고성
108	"	"	김성재	39	강원 삼척
109	"	"	마기덕	26	경남 창원
110	"	"	박능출	37	경남 거제
111	"	"	홍순권	19	강원 명주
112	청진호	'67.12.20	김남현	27	강원 고성
113	"	"	김성호	29	"
114	"	"	기양덕	29	"
115	"	"	오명복	29	강원 명주
116	"	"	이정해	48	강원 속초
117	"	"	이춘식	30	강원 고성
118	광명호	'67.12.25	한해진	40	강원 고성
119	경호	'68.1.6	김주철	29	강원 동해
120	홍익호	'68.1.6	양상을	41	강원 명주
121	행덕호	'68.1.11	박복택	21	경남 충무
122	기성호	'68.3.10	서수중	27	강원 속초
123	창영호	'68.4.17	강명보	18	경남 통영
124	"	"	김학래	26	강원 양양
125	"	"	김홍록	16	강원 고성
126	"	"	이영석	18	경남 남해
127	"	"	이옥진	43	전남 여수
128	"	"	이태용	49	강원 양양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130	종진호	'68.4.27	김용봉	17	강원 고성
131	"	"	윤무출	38	"
132	"	"	임규철	25	강원 강릉
133	"	"	정연태	27	강원 삼척
134	신진호	'68.5.9	김정일	32	강원 명주
135	"	"	오성재	37	서울 성동
136	대성호	'68.5.23	김홍균	24	강원 명주
137	"	"	임병혁	40	강원 양양
138	"	"	한기돌	14	강원 명주
139	춘덕3호	'68.5.29	김재구	21	전남 목포
140	성운호	'68.5.29	김명학	47	경북 울진
141	"	"	김수근	32	경북 영일
142	"	"	박만복	43	강원 명주
143	"	"	이상원	42	"
144	"	"	장창수	35	강원 강릉
145	순덕호	'68.6.1	공문익	37	경기 강화
146	부길호	'68.6.6	김경두	34	전남 여천
147	"	"	김길오	32	전남 완도
148	"	"	김일오	26	전남 여천
149	"	"	박명옥	16	"
150	영신호	'68.6.6	고주봉	30	전남 영암
151	"	"	김이배	31	전남 진도
152	"	"	오판철	32	전북 장수
153	"	"	최동진	20	충남 보령
154	덕산호	'68.6.6	고종현	21	경기 부천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156	덕산호	'68.6.6	서종술	37	경기 부천
157	"	"	이선주	26	충남 당진
158	"	"	이일남	27	경기 부천
159	풍년호	'68.6.8	고준수	25	강원 고성
160	"	"	김병호	17	경남 김해
161	"	"	김영옥	13	강원 고성
162	"	"	김용기	19	경북 예천
163	"	"	신성옥	26	강원 삼척
164	"	"	박형중	15	전남 고흥
165	"	"	이운길	13	강원 고성
166	"	"	전인만	15	"
167	"	"	조문호	33	"
168	"	"	주재근	25	"
169	"	"	최동일	26	전남 완도
170	영신호	'68.6.12	김도경	23	전남 목포
171	"	"	서용식	27	전남 영광
172	해양호	'68.6.16	김광운	36	경기 부천
173	취영호	'68.6.17	김광근	24	경기 용진
174	"	"	손은주	22	경기 부천
175	"	"	손철순	19	경기 용진
176	복성6호	'68.6.17	김영구	21	경기 강화
177	"	"	유병춘	31	인천 동구
178	"	"	홍상표	20	경기 강화
179	성북2호	'68.6.21	김창현	45	인천 중구
180	"	"	심광식	28	전북 군산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182	경흥호	'68.6.23	오남문	30	서울
183	"	"	이기준	27	경기 용진
184	"	"	이일환	41	인천 중구
185	경북호	'68.6.29	김대만	25	전남 광주
186	"	"	이상은	21	경기 강화
187	"	"	차종석	22	전남 신안
188	금용호	'68.7.2	고종환	16	북제주 우도
189	"	"	김남호	18	강원 양양
190	"	"	김명희	13	경기 가평
191	"	"	김용수	15	강원 고성
192	"	"	윤능산	17	북제주 우도
193	"	"	윤두찬	39	전북 완주
194	"	"	이은권	42	경남 울산
195	"	"	주영삼	17	강원 속초
196	"	"	함태천	29	강원 고성
197	신양호	'68.7.2	곽도상	13	충북 영동
198	"	"	김용권	19	경남 통영
199	"	"	박성문	25	강원 고성
200	"	"	장 면	14	"
201	"	"	황두호	18	전북 남원
202	창명호	'68.7.2	김철규	14	강원 고성
203	"	"	선우석	52	서울 성동
204	"	"	이종범	47	강원 고성
205	"	"	이춘만	31	서울 성동
206	"	"	유강열	32	강원 고성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208	백구17호	'68.7.4	윤귀남	21	전남 진도
209	"	"	이영철	27	전남 신안
210	태양호	'68.7.10	김진영	48	경남 울주
211	"	"	조석원	15	전북 김제
212	만복호	'68.7.10	강봉운	64	강원 고성
213	"	"	박홍식	17	경북 영덕
214	"	"	장진구	13	강원 고성
215	"	"	최승복	13	"
216	"	"	최원수	16	경북 영일
217	가덕호	'68.7.10	김상운	35	충북 보은
218	"	"	박종업	55	강원 고성
219	"	"	이해준	34	충남 부여
220	"	"	전석구	24	강원 인제
221	덕성호	'68.7.12	김남국	20	전남 진도
222	"	"	김춘식	26	전남 신안
223	"	"	여인억	46	인천 중구
224	"	"	이양진	23	전남 신안
225	대복1호	'68.8.6	김재욱	47	강원 고성
226	"	"	한택선	35	"
227	"	"	황명삼	25	경북 울릉
228	덕수2호	'68.8.7	강명화	25	경남 남해
229	"	"	김광수	25	"
230	"	"	김인철	17	경남 충무
231	"	"	엄기만	12	강원 속초
232	"	"	장을선	49	충북 청주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234	용명호	'68.10.30	함기남	20	강원 고성
235	해진호	'68.10.30	김종우	27	경북 월성
236	영창호	'68.10.30	김이득	22	경북 영일
237	"	"	임재동	29	경남 거제
238	"	"	진기봉	22	강원 강릉
239	어재호	'68.10.30	전만수	27	강원 고성
240	양진호	'68.11.7	고순철	29	강원 명주
241	"	"	이영기	22	"
242	동일호	'68.11.7	이태운	25	경북 영덕
243	해승호	'68.11.7	김동주	22	강원 명주
244	준호	'68.11.7	문원표	46	"
245	원일호	'68.11.7	이기석	26	"
246	영덕호	'68.11.8	안수선	21	경북 영덕
247	수진호	'68.11.8	전도민	17	강원 양양
248	"	"	정연배	42	경남 진주
249	풍성호	'68.11.8	김종순	22	강원 고성
250	신흥2호	'69.5.1	한종남	19	전남 진도
251	홍덕호	'69.5.5	이광원	18	전남 신안
252	순호	'69.5.10	이동우	27	충남 홍성
253	"	"	임판길	31	전북 옥구
254	"	"	정홍해	28	충남 보령
255	신성호	'69.6.10	이덕표	37	충남 서천
256	"	"	정오석	30	전북 옥구
257	"	"	천문석	38	전북 부안
258	"	"	최두수	35	경남 남해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260	봉산21호	'70.4.29	김태량	27	전남 완도
261	"	"	엄승영	34	경남 울주
262	"	"	정영철	15	전남 진도
263	"	"	최종울	19	전남 강진
264	봉산22호	'70.4.29	박휘만	22	경북 포항
265	"	"	이재근	33	경남 울산
266	"	"	황석균	30	충남 태안
267	금강산호	'70.6.22	권혁근	33	강원 속초
268	"	"	김홍동	14	강원 정선
269	"	"	오관수	28	광주 광산
270	"	"	이순봉	28	경북 울진
271	남일7호	'70.6.30	김일영	36	경남 마산
272	만복1호	'70.7.8	사명남	33	경기 용진
273	만복2호	'70.7.8	최상일	36	"
274	무진호	'70.7.8	민경신	33	"
275	"	"	변호신	33	"
276	"	"	장춘빈	47	"
277	휘영37호	'71.1.6	김상대	28	경남 거제
278	"	"	김인천	27	경기 용진
279	"	"	김창덕	19	경남 거제
280	"	"	박길윤	23	경남 남해
281	"	"	박동순	38	"
282	"	"	박정구	34	전북 군산
283	"	"	박천향	42	경남 남해
284	"	"	송옥천	29	"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286	휘영37호	'71.1.6	정세울	48	경남 거제
287	"	"	정완상	19	"
288	"	"	황영식	50	"
289	창동1호	'71.5.14	김재수	26	강원 양양
290	해행1호	'71.12.25	강홍기	39	전남 여천
291	"	"	김봉식	32	경남 통영
292	"	"	황영천	26	경기 가평
293	동진호	'72.1.10	김정옥	26	전남 여천
294	안영35호	'72.2.4	김계홍	57	전남 완도
295	"	"	김달영	36	"
296	"	"	김소웅	28	부산 영도
297	"	"	김철주	39	경남 남해
298	"	"	박달모	23	"
299	"	"	박장현	20	전남 여천
300	"	"	신태용	27	전남 보성
301	"	"	위춘환	35	전남 완도
302	"	"	이상록	19	경북 영풍
303	"	"	이평일	44	전남 여천
304	"	"	전승철	22	부산 서대신
305	"	"	정동배	18	서울 종로
306	"	"	정태갑	33	경남 남해
307	"	"	최부영	19	"
308	안영36호	'72.2.4	공순경	41	"
309	"	"	김동식	36	경북 칠곡
310	"	"	김두선	33	경남 남해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312	안영36호	'72.2.4	김일봉	21	경남 남해
313	"	"	김임권	31	"
314	"	"	김휘남	23	전남 완도
315	"	"	동병순	18	경남 남해
316	"	"	배현호	29	"
317	"	"	박복만	40	경남 통영
318	"	"	박상국	26	"
319	"	"	이홍섭	32	경남 남해
320	금해11호	'72.5.4	강여진	16	경기 용진
321	해영2호	'72.5.12	김순식	48	경남 김해
322	유풍호	'72.6.9	김정길	30	강원 명주
323	"	"	남무수	32	강원 평창
324	"	"	남정열	39	강원 속초
325	"	"	방승도	37	경남 창원
326	"	"	배민호	48	경남 진해
327	"	"	이수석	30	강원 속초
328	"	"	이원재	32	전남 해남
329	"	"	임창규	19	강원 명주
330	"	"	최성현	44	경북 경주
331	금성3호	'72.8.14	김영식	21	경남 남해
332	"	"	송래규	35	경북 영일
333	일진6호	'72.8.21	김대봉	31	"
334	"	"	이석룡	38	경남 거제
335	오대양61호	'72.12.28	김옥률	17	"
336	"	"	김용철	45	경기 수원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338	오대양61호	'72.12.28	김일만	17	경남 거제
339	"	"	김종원	47	"
340	"	"	김천구	39	"
341	"	"	김태준	17	"
342	"	"	박두남	38	"
343	"	"	박양수	14	"
344	"	"	박영석	34	"
345	"	"	박영중	22	"
346	"	"	박용갑	32	경남 남해
347	"	"	서석기	32	경남 거제
348	"	"	이공희	20	서울 영등포
349	"	"	이재명	34	경남 거제
350	"	"	최영근	49	"
351	오대양62호	'72.12.28	강소동	29	"
352	"	"	박두현	35	"
353	"	"	서영구	38	부산 영도
354	"	"	안수영	37	전북 전주
355	"	"	유경춘	45	경남 거제
356	"	"	정건목	20	경남 남해
357	"	"	정도평	26	경남 거제
358	"	"	정형래	20	"
359	신진1호	'73.7.27	김순남	25	경기 용진
360	"	"	김영희	47	미상
361	"	"	나기용	52	경기 용진
362	"	"	서득수	37	경북 상주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364	신진1호	'73.7.27	조인우	18	경기 용진
365	수원32호	'74.2.15	김근식	19	전남 진도
366	"	"	김생림	49	"
367	"	"	김월근	26	전남 광주
368	"	"	김용기	34	전남 진도
369	"	"	김용길	18	전남 완도
370	"	"	김종관	23	전남 해도
371	"	"	박경원	31	전남 진도
372	"	"	송민경	53	경남 남해
373	"	"	안병진	28	경북 상주
374	"	"	유용석	22	전북 완주
375	"	"	이대홍	20	경북 남해
376	"	"	이성용	28	전남 영암
377	"	"	이천석	28	경북 영덕
378	"	"	정유석	30	전남 고흥
379	수원33호	'74.2.15	고광희	34	인천 북성
380	"	"	기노석	18	전남 무안
381	"	"	김용건	27	경북 군위
382	"	"	김재봉	21	전남 진도
383	"	"	김중식	27	"
384	"	"	김현남	24	"
385	"	"	박남주	36	"
386	"	"	박종주	45	인천 남구
387	"	"	백홍선	27	전남 장흥
388	"	"	임태환	44	부산 영도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390	수원33호	'74.2.15	정중윤	34	전남 진도
391	"	"	최복열	33	"
392	"	"	최영철	18	충남 청양
393	천광호	'75.8.8	김두익	45	강원 원주
394	통영호	'77.5.10	최장근	35	경남 충무
395	해왕7호	'80.1.26	김환용	22	전남 완도
396	동진27호	'87.1.15	강희근	35	경기 강화
397	"	"	김순근	44	전남 여수
398	"	"	김상섭	35	전남 고흥
399	"	"	김영현	22	부산 진구
400	"	"	노성호	25	충북 청원
401	"	"	박광현	38	경남 함양
402	"	"	양용식	27	전남 담양
403	"	"	임국재	32	경북 안동
404	"	"	정일남	30	전남 고흥
405	"	"	진영호	26	경남 합천
406	"	"	최종석	40	부산 사하
407	"	"	추영수	55	인천 동구

4. 해군 I-2정 승무원

번호	어선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408	해군 I-2정	'70.6.5	권덕찬	22	전남 광주
409	"	"	김기강	28	강원 원주
410	"	"	김태중	23	경기 평택
411	"	"	도종무	22	경북 청도
412	"	"	맹길수	24	전남 해남
413	"	"	문석영	23	제주
414	"	"	박재수	23	경남 밀양
415	"	"	서금성	22	인천 동구
416	"	"	신영훈	24	서울 중구
417	"	"	이덕주	29	경남 진양
418	"	"	이재영	23	전북 정읍
419	"	"	임성우	37	경북 의성
420	"	"	전해열	21	경북 청도
421	"	"	정광모	23	서울 중구
422	"	"	정수일	41	"
423	"	"	정원석	24	부산 서구
424	"	"	조진오	23	부산 해운대
425	"	"	조태봉	34	경기 연백
426	"	"	최응호	25	인천 중구
427	"	"	함영주	24	서울 중구

5. 항공납북억류자

번호	항공기명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
428	KAL	'69.12.11	김봉주	33	충남 아산
429	"	"	성경희	28	서울 종로
430	"	"	유병화	42	서울 용산
431	"	"	이동기	53	강원 강릉
432	"	"	임철수	55	강원 양구
433	"	"	장기영	48	서울 종로
434	"	"	정경숙	28	서울 중구
435	"	"	제헌덕	43	서울 성북
436	"	"	조옥희	48	경기 평택
437	"	"	최석만	42	서울 영등포
438	"	"	최정웅	32	강원 원주
439	"	"	황 원	38	인천 동구

6. 기타

번호	납북장소	납치일	납북자 성명	당시 연령	출생지(주소)
440	노르웨이	'78.4.13	고상문	29	서울 성동
441	오스트리아	'87.7.20	이재환	24	경남 마산
442	중국	'95.7.9	안승운	50	(서울 구로)

7. 남북역류자 및 월북자 정치범수용소 수용 현황

성 명	전직 및 입북경위, 수감 실태
강광석	1992년 12월, 부동산 중개업.
강중석	서독광부. 1971년 북한 정보원에 의해 강제납북.
고상문	전 수도여고 교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연수중 여권분실을 신고 하러 한국대사관을 찾던 중 택시기사의 착오로 북한대사관에 들어 갔다가 북한 공관원에 의하여 강제 납북. AI가 승호리수용소 수감자 명단을 발표한 직후 북한은 1994년 8월 「평양방송」을 통해 고 씨가 자진월북하여 지리학연구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고 씨 가족이 유엔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북한은 고씨가 북한에서 재혼하여 살고 있다는 회신내용을 유엔을 통해 1995년 고씨의 가족들에게 통보해 음. 그러나 정부는 북한측 답변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고씨의 송환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김보겸	택시기사.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강제 납북.
김성배	1983년 5월, 건설회사 임원.
김성진	1984년 9월, 군인 이병.
김순성	서독 광부.
김원석	1990년 2월, 관광사 대표.
노준우	농부.
신숙자	간호원. 남편 오길남을 따라 1985년 11월 북한대사관을 통해 월북. 평양 관광거리에서 살다가 1986년 11월 오길남이 북한을 탈출하자, 딸 2명과 함께 요덕수용소에 수감. 1988년 1월 부터 1989년 2월까지 요덕수용소내 결핵요양소 간호원으로 일함. 북한당국은 수감사실 부인.
신원식	1991년 6월, 美교량설계원.
양철성	1988년 9월, 부동산중개업.
염규환	계약회사 직원. 1981년 국제회의 참석차 일본에 출장갔다 조총련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 납북.
유성근	주서독 한국대사관 노무관. 1971년 4월 서베를린을 여행하다 북한 공작원에게 강제 납북됨. 당시 부인 정순섭씨와 두 딸 경희(7살), 진희(1살)양도 함께 납북.

성명	전직 및 입북경위, 수감 실태
이대식	1988년 9월, 파라과이 이민.
이영훈	1992년 4월, 변호사 사무장.
이장수	조병욱과 함께 월북.
이재관	1989년 12월 삼성전자 대리점 근무.
이재환	1989년 7월, 재미유학생.
이준광	육군 중령. 진급 누락에 불만을 품고 월북.
이치수	농부.
정락호	1991년 7월, 조광해운 선원.
정종도	재미 과학자. 인도네시아를 여행중 북한 공관원에 의해 강제 납북. 북한당국은 1989년 사망했다고 AI에 답변.
조병욱	해군 수송기지장 근무원. 1976년 10월 월북.
조흥래	1992년 8월, 운동기구점 운영.
최종석	1987년 1월, 동진27호 납북선원.
최희창	1991년 10월, 조광해운 선원.

* 신원 미확인자(권오문, 조생구, 서학식, 박충신, 이찬수, 유재원, 김준길)

* 국제사면위원회(AI) 보고서, 국가정보원 자료 및 귀순자 증언에 의거 작성

〈부록 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1998년9월5일최고인민회의제10기1차회의에서 채택)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적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빨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릉성변명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 치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체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

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

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튼튼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균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률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옹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옹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 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 창설운동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북고주의적경향에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넓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

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

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 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

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새선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 부문 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 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 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 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들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
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
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과 규정안, 현
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
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
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
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나오거나 고친다.
-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

의앞에 책임진다.

제 4 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 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1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썬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태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 의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부록 III> 북한인권상황 관련 제50차 유엔인권소위 결의안

모든 유엔회원국이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인권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국제인권규약(A, B) 및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임을 인식하고, 북한이 1998년 5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최초 보고서를 심의받은 것을 유엔협약기구와의 협력에 긍정적인 징후로서 고려하며,

1997년 8월 21일 인권소위 결의(1997/3)를 상기하면서 북한내 인권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극도로 어려우며 특히 북한 정부가 독립적인 언론인 및 인권운동가들을 계속 탄압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북한내에서 불법처형, 실종에 관한 빈번한 보고와 수천명의 정치범이 억류되어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학대에 따라 질병, 기아 및 유기로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를 우려하며,

1. 북한이 1998년 5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최초 보고서 심의를 받은 것을 환영한다.
2. 북한정부가 자국 및 외국으로 출국할 권리 및 자국으로 귀국할 권리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 제13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긴급 촉구한다.
3. 북한 정부가 유엔헌장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의 절차 및 활동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4. 북한 정부가 독립적인 국내 및 국제인권감시기구가 북한의 현 인권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과 조사결과 보고서를 북한내에서 간행, 배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국제인권기구 및 인도적 구호기구가 북한내 인권상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
6. 국제 인도적구호기구가 북한 주민의 기아와 여타 경제난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7. 인권위원회가 차기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토의할 것을 권고하며,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상황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51차 인권소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토의할 것을 결정한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외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계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500원
98-05	북한 의자유치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4,500원
98-07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최진욱 정영태 홍용표 박형중 허문영	공저	6,0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발간예정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발간예정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
이금순
김수암 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 6,500원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빈 면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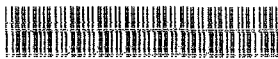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604, 901-2559 / FAX:901-2547)

빈 면



R0007442
민족통일연구원